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1548-0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Final Report on Quality Improvement Consulting for
『Current Survey on the applied effects of the minimum wage』

사단법인 한국노동경제학회

2022.7.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품질개선 컨설팅의 최종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사단법인 한국노동경제학회

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최형재,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연 구 원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보 조 원	이수호,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학부생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주제어	최저임금, 노동, 저임금 근로자
연구기간	2022. 4. 27. - 2022. 7. 26.
연구기관	한국노동경제학회
연구진구성	최형재,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최저임금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제118040호)에 조사 근거를 두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의 표본설계 개선안 적정성 검토’, ‘조사대상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조사표 설계 개선’, ‘조사체계 변경에 따른 조사방법 개선안 제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선행연구, 표본설계내역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을 연구하여 조사목적에 맞는 조사대상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조사표 설계, 조사체계 및 조사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를 3가지로 제시하고 각 방안의 근거와 함께 장단점을 고찰하였다. 3가지 방안에는,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안,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설정하여 조사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삼아 조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산업별 및 기업규모별 저임금 근로자의 분포를 고찰함으로써 조사대상 산업의 포괄범위 및 기업 규모 군 확대에 따른 논의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표본설계 개선안을 진단하여,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를 표본추출틀로 삼을 것과 업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층화하여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으로 표본을 배분할 것, 그리고 업종 및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모집단 특성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조사표를 검토하여 응답대상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사업체의 정보 확인 및 타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이 주도하는 현행 조사체계를 근로감독관의 협력 하에 전문 조사기관이 현장 조사 및 정보입력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요 약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최저임금이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제 느끼는 최저임금 수준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최저임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21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작성승인사항, 표본설계 내역 및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 선정 기준 검토’, ‘조사체계 변경 필요성’ 및 ‘조사방법 개선안 제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2021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선행 연구, 조사결과와 기존의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조사목적에 맞는 조사대상 기준, 조사표 설계, 조사체계 및 조사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표본설계 전문가¹⁾ 자문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품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및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와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설정하고 있는데, 향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근로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의 1.5배가 최근에는 거의 중위임금 수준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현행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임금분포 상에서의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근로자를, 1) 현행대로 최저임금의 1.5배 이하 근로자로 설정하는 방안, 2)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삼는 방안, 3)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삼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이기재 교수,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변종석 교수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은 통계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최저임금의 1.5배가 중위 임금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를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방안은 중위임금이 임금분포 상에서의 지표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변동과 상관 없이 일정 수준(전체 근로자의 절반)의 근로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조사대상 모집단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는 방안이다.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은 중위임금의 2/3 이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상적인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현행 방식 보다 포괄되는 조사대상이 협소하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사업체 및 근로자 추출에 있어 현실적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각 방안의 장단점들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 방안이 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10개 업종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업종의 포괄 범위를 17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더 다양한 업종에서 최저임금 관련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저임금 근로자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업종의 폭을 넓혀 조사할 경우 보다 종합적인 인식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 보았을 때 일부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수의 저임금 근로자만 종사하고 있어 이들 업종에서 조사대상 사업체와 저임금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의 포괄 업종 결정 시 조사의 수월성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논리로, 조사대상 기업체 규모(현재는 0인부터 300인 미만 사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문제도 조사의 현실적 어려움까지 감안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본추출 틀은 현재와 같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실태 현황을 활용한 2중 추출 형식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보인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및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의 분포를 파악하고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사업체 리스트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사업체 및 근로자 그리고 대체표본들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현재 업종 및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비례배분하고 있는 표본배분 방식을 제공근 비례배분으로 변경하고, 표본오차를 고려하여 사업체 조사목표 표본수를 현행 3,000개에서 3,500개로 확대하며,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의 층화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모수 추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조사표의 구성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근로자수는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있는 반면 사업체 대상 조사표에서는 일용/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응답대상을 일치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 응답대상자 선정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사업체 조사표에서 관련 정보가 도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체의 정보 확인 및 기타 행정자료 연계를 위해 사업체 조사표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되도록 하며, 시간 흐름 순으로 응답란이 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 주도 하에 임시 조사원을 통해 조사되었던 조사체계를 조사 전문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사체계의 변경은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사원 채용/교육/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조사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사체계 변경 시에도 기업체들로 하여금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의 협력이 요청되며, 조사 불응 또는 비협력 사업체들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조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2
3. 연구방법	3
4. 연구 추진 절차	3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4
1. 현행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틀	4
2. 표본설계의 특징	7
3. 선행 연구 검토 및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항목별 개선안	7
제3장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논의	17
1.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17
2. 최저임금 등 임금분포와 조사대상	18
3.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및 임금·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21
제4장 표본설계 개선(안) 검토	33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설정: 조사대상 선정의 문제	33
2.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범위 확대	34
3. 표본크기, 층화, 표본배분, 가중치 산출 및 추정 관련	34
제5장 조사표 구성 및 조사체계 변경안 검토	36
1. 조사표 구성 검토	36
2. 조사체계 변경안 검토	43

제6장 결론 및 제언	49
1.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포괄 범위	49
2.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체 규모	52
3. 표본설계	61
4. 조사표 구성	62
5. 조사체계	63
 참고문헌	 65
 부 록: 조사표	 66

표 차 례

<표 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현행 방식과 기존 연구의 개선안	6
<표 2-2> 표본설계 방안 요약	11
<표 2-3> 조사대상 업종: 현행 및 개선안	16
<표 3-1> 최저임금 및 시급 임금분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19
<표 3-2> 최저임금 및 시급 임금분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
<표 3-3>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시간당 임금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	24
<표 3-4> 최저임금의 임금분위수 변화효과(1998~2008): 고정효과 모형	26
<표 3-5> 최저임금의 임금분위배율 변화효과(1998~2008): 고정효과 모형	27
<표 3-6> 최저임금 인상이 분위수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2007~2021)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활용	28
<표 3-7> 임금 총액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	29
<표 3-8> 임금구간, 실질 최저임금, 각 임금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퍼센트)	30
<표 3-9> 상대 임금구간, 각 임금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퍼센트)의 변화	31
<표 6-1> 업종별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단위: %)	53
<표 6-2> 업종별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단위: %)	54
<표 6-3> 업종별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단위: %)	55
<표 6-4> 저임금 근로자의 산업분포 - 2021년(단위: %)	56
<표 6-5> 산업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액 1.5배 이하 근로자의 비중 - 2021년(단위: %)	58
<표 6-6> 산업별 및 규모별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의 비중 - 2021년(단위: %)	59
<표 6-7> 산업별 및 규모별 중위임금의 2/3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 2021년(단위: %)	60

그림 차례

[그림 2-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3
[그림 2-2]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14
[그림 3-1] 실질 최저임금 10% 인상이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상대임금에 미치는 효과	25
[그림 3-2] 임금 총액 기준 분위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30
[그림 3-3] 상대 임금구간별 고용 비중 변화분 평균값과 누적값	31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결정수준 등에 대한 인식을 매년 조사하여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음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저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기업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제 느끼는 최저임금 수준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본 조사는 1년 주기 조사로 매년 11월에 조사되고 있으며, 조사는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에서 수행하고, 전산입력 및 처리, 결과 분석 등은 외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통계관리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 본 조사는 최저임금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7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후 당해 연도부터 매년 조사·작성되고 있음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는 저임금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10개 업종의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3,000여 개 표본 사업체이며, 동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최저임금 시급액의 1.5배 이하의 10,000명 내외의 표본근로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조사항목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사항,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한 생각,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수준 등이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조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이들 이외에 사업주의 경영상황과 근로자의 기본 사항이 조사됨
- 그러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사업체의 모집단 설정이 불명확하여 조사된 표본을 통해 의미 있는 통계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 동 조사의 통계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안이 제시되었음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현행 조사 모집단은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되어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1.5배 이하 범위로 설정된 임금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모집단 설정과 더불어 표본추출 방식, 표본의 크기, 가중치 등 표본에 대한 설계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 설정, 표본설계 등과 관련하여 제시된 개선안의 적절성을 점검하되, 특히 조사대상인 '저임금 근로자'의 설정기준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대상 모집단 설정을 도모하고 통계의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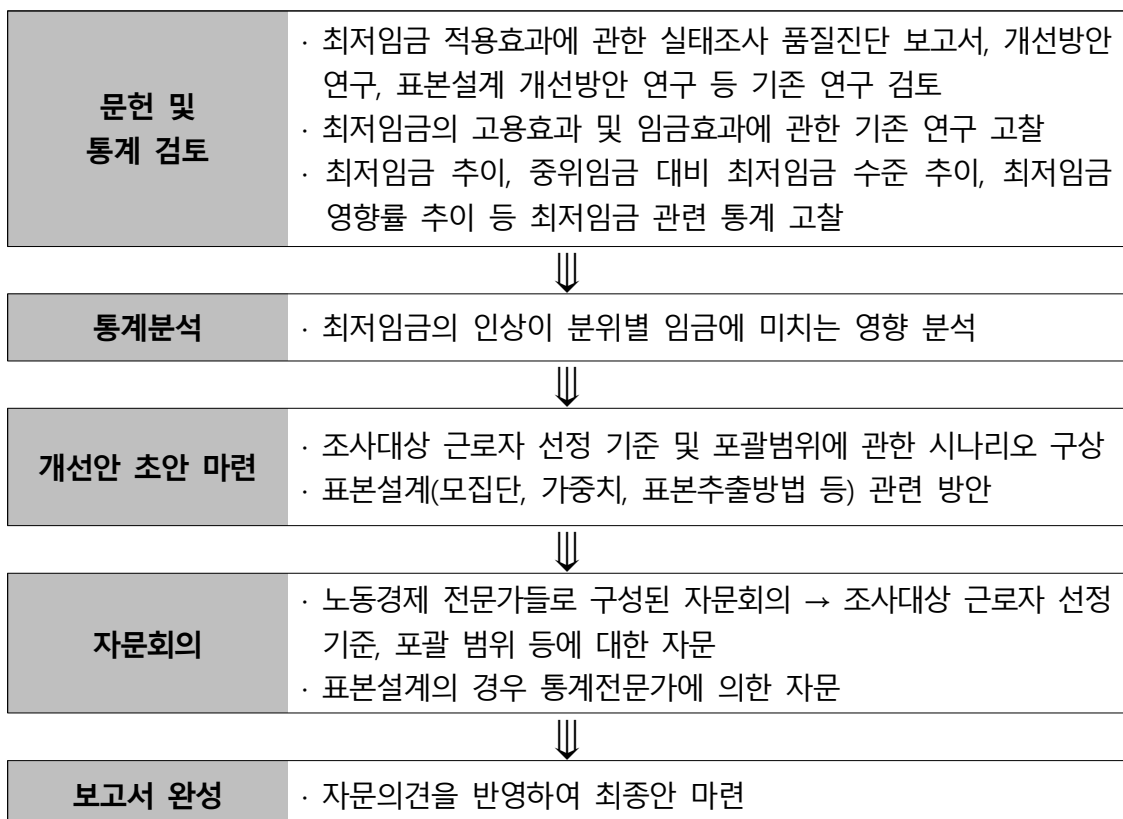
2. 연구내용

-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통계품질 개선방안 고찰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2020)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2021)
- 조사 모집단(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 설정 기준 연구
 - 최저임금(인상)의 임금격차(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분석
 - 임금분포 상 어떠한 (저임금) 근로자 집단이 최저임금(인상)에 영향받는지 파악
- 표본설계 개선안 진단
 - 표본추출틀 - 표본배분
 - 표본 크기 - 가중치 부여 - 층화
- 조사체계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 점검 및 개선안 연구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기간제 조사원의 현장조사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전문 조사업체에 의한 현장조사
 - 담당업무에 있어 근로감독관과 전문 조사업체 간 역할 조정

3. 연구방법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통계품질 개선 관련 기존 문헌 고찰
-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 설정 기준 연구
 -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및 실증연구
 - 최저임금(인상) 적용 임금분포 분석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배율 추이 분석
 -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임금분위 분석
 - 전문가 자문
- 표본설계 개선안 진단
 - 기존 품질개선 연구에서 제시된 표본설계 관련 개선안의 적절성 진단
- 조사체계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 점검 및 개선안 연구
 - 조사 담당자, 자료 분석 담당자 등 면담 조사

4. 연구 추진 절차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1. 현행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틀

1.1 조사체계

- 현행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는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의 주관 하에 임시 조사원들에 의해 현장 조사되고 있으며, 전 산업력 및 처리, 그리고 결과분석 및 보고는 연구기관에서 수행

1.2 조사 모집단

- 조사 모집단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체 중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임

1.3 표본추출틀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를 활용한 2중 추출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부터 산업·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분포 정보를 추출한 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에 적용하여 조사대상 사업체 추출

1.4 표본의 크기

- 현행 실태조사의 (목표)표본의 크기는 사업체의 경우 3,000개이고, 근로자의 경우 이들 사업체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10,000명
- 2020년의 조사의 경우 추출된 2,857개소의 사업체 표본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조사함

- 4인 이하 : 사업체당 최대 4명
- 5 ~ 9인 : 사업체당 최대 5명
- 10 ~ 99인 : 사업체당 최대 7명
- 100 ~ 299인 : 사업체당 최대 10명

1.5 총화

- 산업대분류 기준 10개 업종과 종사자 규모를 기준으로 한 6개 집단의 교차 셀로 총화가 이루어짐
 - 10개 업종에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됨
 - 사업체 규모는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등의 6개로 분류됨

1.6 표본배분

- 현행 실태조사 표본배분 방식은 단순 비례배분에 기초하고 있음

1.7 공표범위

- 실태조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통계표는 산업별(10개) 및 규모별(6개)로 작성되고 있으며, 원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1.8 가중치

- 현행 실태조사는 모집단 설정이 불명확하여 가중치 적용이 불가한 상황임
 - 즉, 현행 방식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의 전체 명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단 추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이 불가능함

1.9 조사항목

-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각각에 대해 각 20문항 내외 조사
 - 공통 조사내용: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 및 판단기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 등
 - 사용자 조사내용:
사업체특성, 경영여건(매출액 등), 근로자특성별 고용규모,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조정 여부, 고용사유, 임금인상에 미친 영향, 임금대비 생산성 수준 등

－ 근로자 조사내용 :

인적속성(성, 연령, 학력, 직종 등), 가구특성(가구원수), 고용형태, 현 직장의 임금 등

<표 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현행 방식과 기존 연구의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① 조사체계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 연구기관에서 전산입력·처리, 결과분석 및 보고 수행	• 전문 조사업체에서 현장조사, 전산입력·처리 수행 • 연구기관이 결과분석 및 보고 수행
② 조사 모집단	•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③ 표본 추출틀	•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2중 추출	•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④ 표본크기 (목표)	• 사업체 3,000개, 근로자 10,000명	• 사업체 3,500개, 근로자 10,000명
⑤ 층화	• 업종(10개), 종사자 규모(6개)	• 업종(17개), 종사자 규모(6개)
⑥ 표본배분	• 비례배분	• 제곱근 비례배분
⑦ 공표 범위	• 통계표: 10개 산업, 6개 규모별 • 원자료: 미공개	• 통계표: 15개 산업, 6개 규모별 • 원자료: 통계청 사이트(MDIS)를 통해 공표범위 내에서 제공
⑧ 가중치	• 가중치 미적용	• 업종별 종사자 규모별 가중치 적용
⑨ 조사항목	• 근로자·사업주 대상으로 경영/근로 현황 및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인식 등 조사 (사업주 13문항, 근로자 20문항)	-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2021, 한국조사연구학회)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

2. 표본설계의 특징

-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추출틀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확률추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조사대상 중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일부만 파악되어 조사의 효율성이 저하됨
 -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과도한 조사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차선택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대략적인 모집단틀을 구성하여 표본추출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사의 효율성은 다소 높아지지만, 여전히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결과를 얻게 됨
 - 이러한 조사상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자료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모집단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에 따른 표본 수를 결정함
 - 이 때 산업분류는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상위(사업체 수) 10개 영역으로 하고, 사업체 규모는 299인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6개 규모로 함

3. 선행 연구 검토 및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항목별 개선안

3.1 선행 연구 검토

3.1.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2020)

1) 표본설계의 대표성 확보

- 표본설계에서 모집단(조사대상)의 설정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모집단(조사대상)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 평가에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현행 유지: 저임금 근로자를 특정하고 모집단으로 구성한 것은 적절함. 다만 모집단의 개념과 관련하여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기술 필요

○ 조사대상 업종 및 대상 확대

- 조사대상 업종의 확대: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된 산업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된 사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 및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설문을 진행하는 현행 방식으로, 조사 결과에서의 저임금 근로자의 특성은 경제 전체에서의 최저임금 수급자와 차이가 있음
- . 본 조사의 결과를 전국 단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심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수 및 피고용인의 수를 고려하여 표본설계 후,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진행하되, 저임금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없다는 것을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에 제시
-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영향 분석’ 혹은 ‘전체 사업장에 대한 영향 분석’으로 목적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모집단의 범위 설정 필요
- 본 조사를 가능한 전체 업종별 규모별 분포를 볼 수 있도록 할 경우, 저임금 근로자가 충분히 표집될 수 있도록 하려면, 표본규모가 커져야 하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① 일반국민 인식조사 ② 사업주 및 근로자 심층면접조사 ③ 근로자 임금실태조사 등의 부가조사를 통해 결과 보완 필요

2) 표본 규모의 적절성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표본 규모 및 표본 할당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통계적으로 최소한의 신뢰성이 보장되는 규모로 표본확보(각 셀별 최소 32개 표본), 최소 2,000에서 최대 4,000개소 정도의 사업체에 대해서 설문 진행. 이 경우 시간 및 조사 비용 발생으로 $60 \times 32 = 1,920$ 인 2,000여개소 정도를 추출
- 조사대상 업종을 전산업으로 확대. 사업체 규모도 현재 1~4인에 집중하기 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업체 규모의 표본 확대
- 사업체 규모 100~299인은 늘 통계적 유의성 문제에 걸림. 표본을 약간 늘리고, 사후 가중치로 조정
- 산업별 최소 표본(총합 기준)을 100개 이상으로 하고, 3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표본 수 확대. 분석 항목을 30~99인과 100~299인으로 구분하기보다 30인 이상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을 것임

- 본 조사의 결과는 세부 셀의 사례수의 한계로 일반화 어려움. 따라서 사업체는 산업대분류별, 근로자 규모별로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근로자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고용형태별, 직업별, 소속 사업체 산업별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필요

3) 표본설계 관련 주요 개선 방향

- 저임금 근로자를 특징하고 모집단으로 구성한 것은 적절함. 다만, 모집단의 개념과 관련하여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
- 조사대상 업종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함
- 조사대상 업종을 전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체 규모도 현재 1~4인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업체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 표본크기의 확대가 필요함

3.1.2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2021)

동 연구에서 제안된 표본설계 방안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조사대상 확대

- 업종 확대 및 근로자 확대는 최저임금위원회 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본 조사에서는 현행 10개 산업은 17개 산업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하였음
 - 저임금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 사업체별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효과를 파악하고, 저임금근로자와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교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음

2) 표본추출틀

- 적절한 표본추출틀 확보를 위해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기업통계등록부(통계청), 고용보험 DB(한국고용정보원)를 비교하여 최저임금 적용 효과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에 대한 최신성, 포괄성 및 고용노동부 내 다른 통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사업체 명부로 설정함

3) 표본크기 결정

- 2020년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수 및 근로자 수의 표본크기를 결정함
 - 사업체 수의 표본크기는 “저임금 종사자 수”, “시간당 임금”에 대한 전국 기준, 업종별 기준, 가중/비가중 등의 추정 결과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약 3,500개 사업체로 결정함
 - 이는 10개 산업을 17개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과 사업체 내 저임금근로자 수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사의 표본 사업체 수 3,000개보다 500개 사업체를 증가한 것임
- 사업체 내 조사 대상 근로자 수의 표본크기는 현행과 같이 10,000명을 목표로 설정함. 이를 고려하여 본 과제에서는 업종별 및 사업체 규모별 추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확보해야 할 최소 목표 표본크기를 제시하였음

4) 총화변수

- 2020년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저임금 종사자 수”, “시간당 임금”, “월 평균 임금” 등의 주요 변수를 이용하여 총화변수로 사용한 업종과 종사자 규모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표본설계에서 사용하는 업종과 종사자 수 규모의 총화변수가 적절함을 확인함

5) 표본배분 방법

- 본 과제에서는 기존 10개 업종 및 17개로 업종을 확대할 때의 표본배분을 모두 검토하여 제공하였음
- 조사 대상 사업체를 결정할 때 전체 사업체 및 임시일용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를 검토하여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표본을 배분함
- 총화추출법에서 널리 사용하는 기본적인 표본배분방법(비례배분, 제공근 비례배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별로 기대표본오차를 산출해 비교하여 제공근 비례배분방법으로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 표본크기를 배분함

6) 사업체 내 저임금근로자의 표본추출

- 사업체 내 저임금 근로자를 추출할 때, 사업체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 명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근로자 추출 방안을 제안함
-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성별, 연령대, 직급, 근속연수, 부서 등의 직무분야 등 근로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근무 특성을 반영하여 추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7) 가중치 및 추정식

-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는 국내 사업체와 (최)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모집단 특성 추정의 추정 오차 최소화를 통해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8) 표본설계 방안 요약

- 제안한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과 현행 표본설계와 비교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2-2〉 표본설계 방안 요약

구분		현행 표본설계	새로운 표본설계
목표 모집단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있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저임금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및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
		2021년 시간 단위 최저임금액 8,720원의 1.5배인 13,080원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상용 및 임시일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및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저임금근로자
표본추출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추출단위		사업체 및 개인	좌동
표본 크기	사업체	3,000개	3,500개
	개인	10,000명	좌동
층화		업종(10개), 종사자 규모(6개)	업종(17개), 종사자 규모(6개)
표본배분		비례배분	제공근 비례배분
가중치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출처: 한국조사연구학회(2021)에서 인용

3.2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항목별 개선안 정리

3.2.1 조사체계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주도 하에 조사원들을 통해 조사되고 있는 현행 조사체계는 실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 조사업체에 의한 체계적인 조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한국조사연구학회, 2020)
- (개선안) 조사업체가 ‘현장조사, 전산입력, 전산처리’를 일괄 수행하고 ‘결과분석’은 연구기관에서 실시
- * 기존 현장조사 담당자(근로감독관)가 전문 조사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실천 방안 수립 필요

3.2.2 조사 모집단

-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최저임금액 1.5배 이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함(한국조사연구학회, 2020)
 - 조사대상인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5배로 설정한 것은 2007년에 설정한 기준(2005년 최저임금 2,840원)이며 현재까지 어어져 옴
 - 최저임금이 2021년 현재 8,720원으로 2005년에 비해 3배 이상 상향된 현 상황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 필요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약 2/3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1.5배 = 중위임금([그림 2-1] 참조)으로서 조사대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황임

< 참고: 용어 정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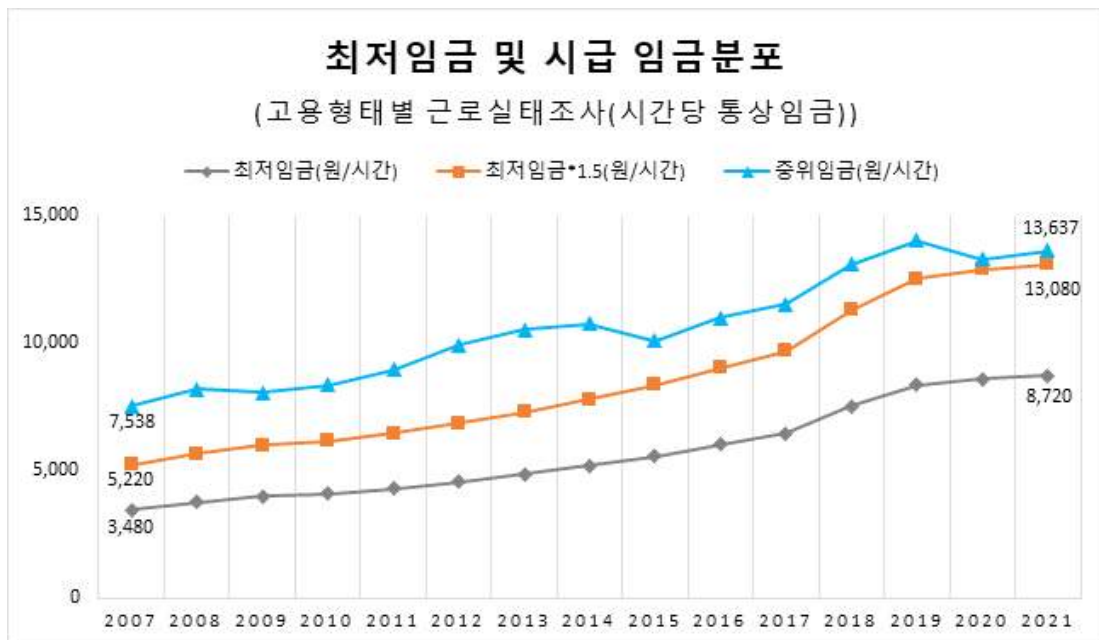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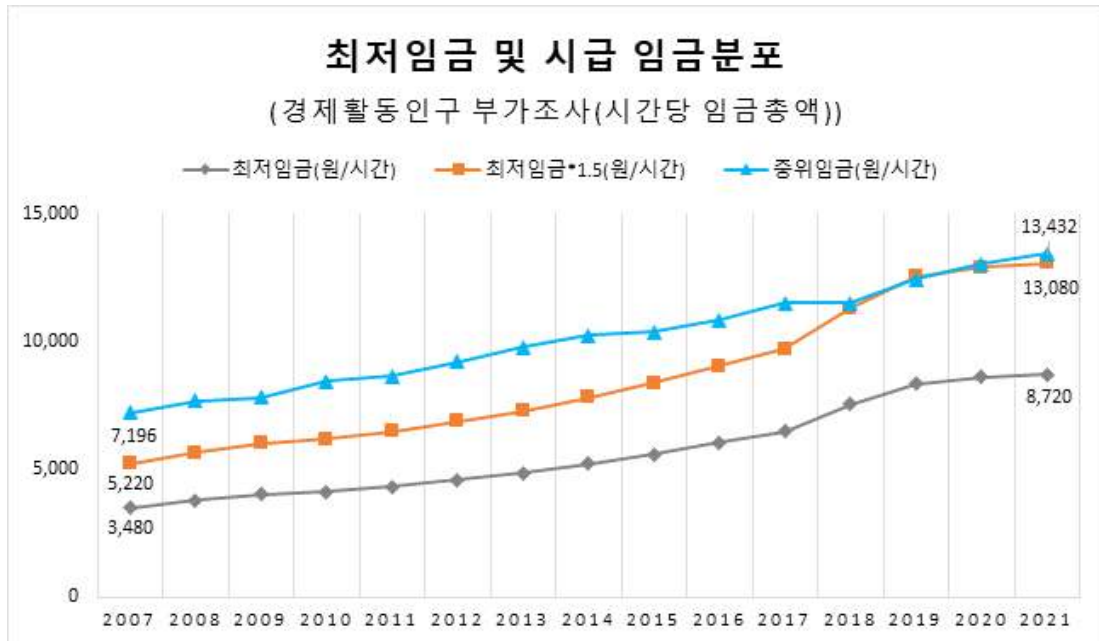
- **최저임금(액)(minimum wage)**

- 근로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의 최저수준

- **중위임금(median w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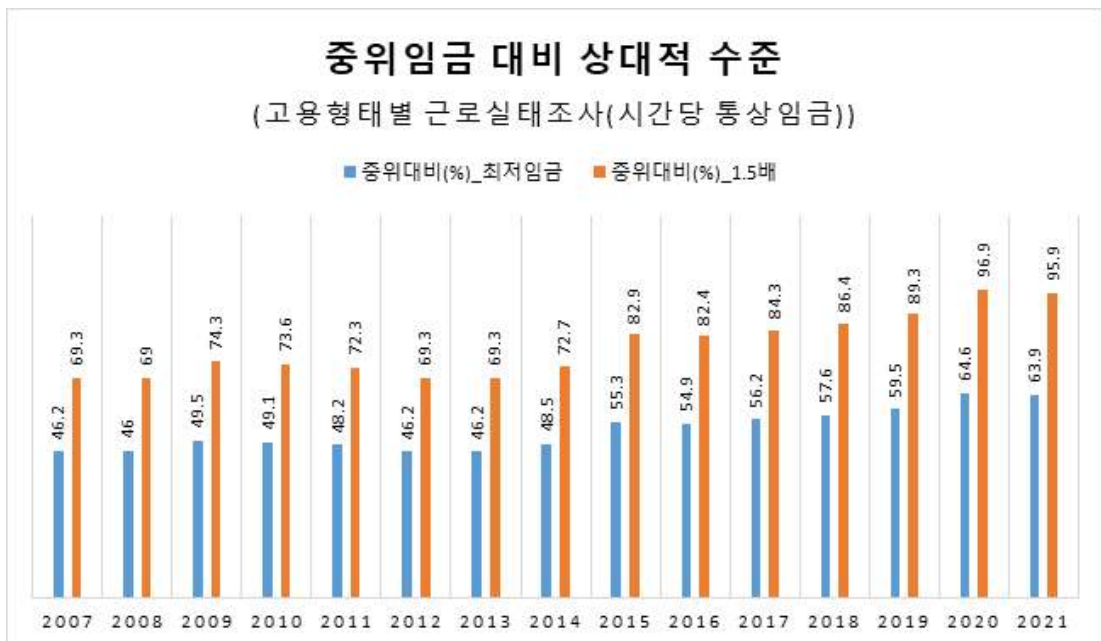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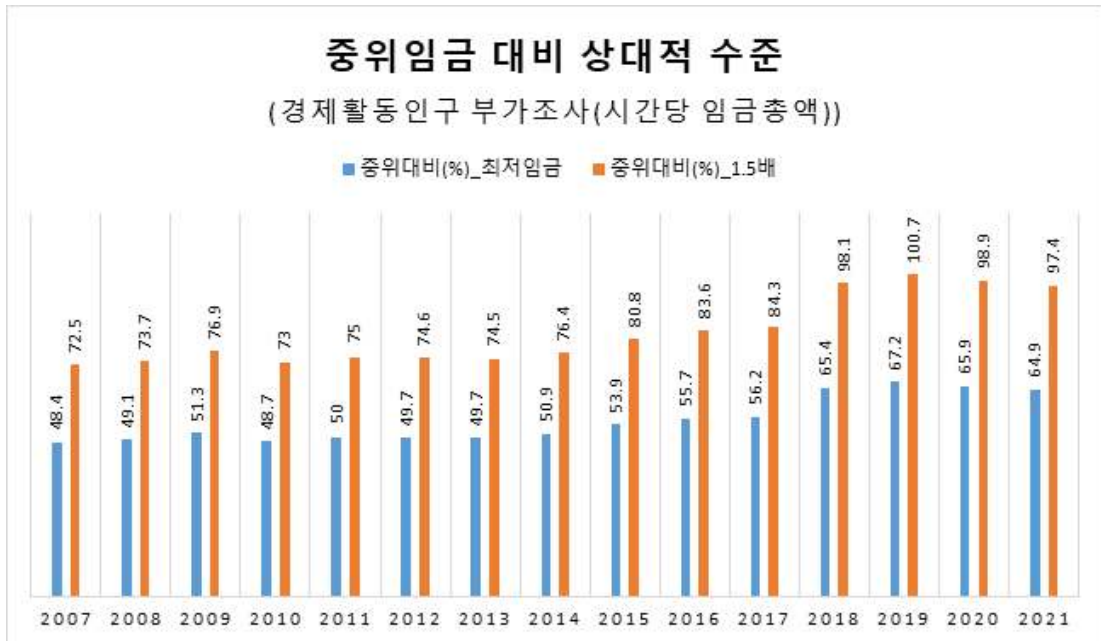
- 임금을 가장 낮은 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까지 정렬했을 때 50분위의 위치에 해당하는 임금수준. 즉, 임금분포 상에서 하위 임금자들과 상위 임금자들의 비율이 각각 50%가 되게 하는 임금수준

[그림 2-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 본 보고서의 <표 3-1>, <표 3-2>를 활용하여 그래프 작성

[그림 2-2]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 본 보고서의 <표 3-1>, <표 3-2>를 활용하여 그래프 작성

3.2.3 표본추출틀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한 2중 추출 방식은 다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의성도 떨어짐(한국조사연구학회, 2021)
 - 조사대상 선별 시점에서 활용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는 이전 연도의 자료가 활용되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짐
- (개선안) 시의성 있고 표본 규모가 큰 사업체노동실태현황(214만개 표본 보유, 매년 갱신)을 표본추출틀로 사용

3.2.4 표본크기(목표)

- 상대표준오차를 적용하여 분석하거나 모집단 사업체수 비례 기준의 가중값을 부여할 경우 사업체 부문 조사의 적정 표본 크기는 3,500개로 파악됨(한국조사연구학회, 2021)
- (개선안) 사업체 3,500개; 근로자 10,000명

3.2.5 총화

- 현행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10개의 산업 분류는 2007년에 조사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어서 15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그러한 조사 대상 산업분류가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가 필요함(한국조사연구학회, 2020)
- (개선안) 종사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6개 범주로 유지하되, 업종은 17개로 확대

<표 2-3> 조사대상 업종: 현행 및 개선안

현행(10개 업종)	개선(17개 업종)	
C. 제조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참고: 한국조사연구학회(2021)

3.2.6 표본배분

- 현행 단순 비례배분 방식은 통계작성이나 추정에 있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크기가 작은 층에 표본이 작게 배분되어 층별 표본오차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개선안) 층별 통계작성이 용이한 제곱근 비례배분 방식의 표본배분

3.2.7 가중치

- 현행 실태조사에서는 표본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아 전체 모집단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함
- (개선안) 표본배분표와 조사완료된 표본사업체의 분포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산업대분류 및 사업체 규모의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국조사연구학회, 2021)

제3장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논의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을 저임금 근로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의 임금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선정 기준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도의 임금분포(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범위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으나, 상당 시간이 흐른 현재에도 이러한 기준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이번 장에서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실증적 결과들을 살펴봄

1.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 저임금(low wage 또는 low pay)의 개념은 크게 '절대적' 저임금과 '상대적' 저임금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저임금이라 함은 상대적 저임금을 의미함(성재민, 2014; 정성미, 2011; 강승복, 2005)
 - 절대적 저임금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임금'으로서 최저생계비, 빈곤선 등 특정 임금 수준 이하의 임금으로 측정되며, 나라마다 서로 그 수준이 달라 국가간 비교가 어려움
 - 다만, 절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를 위해 편의상 p10(하위 10분위 임금) 지표가 활용됨
 - 상대적 저임금은 OECD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중위임금(median wage)의 2/3 이하의 임금'으로 정의되며 국가간 비교 시 통상적인 저임금 근로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저임금 근로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내 연구들은 OECD의 상대적 저임금 개념을 활용하고 있음(정성미, 2011; 성재민, 2014; 강승복, 2005; 현대경제연구원, 201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6; 조문경, 2015; 김복순, 2018; 유완식, 2019; 김은하·백학영, 2011; Grimshaw, 2011 등)

- OECD(OECD Data)에서는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저임금(low pay) 근로자 비중과 고임금(high pay) 근로자 비중으로 구분하여 국제비교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 저임금은 중위임금의 2/3 이하, 고임금은 중위임금의 1.5배 이상의 임금으로 정의됨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서의 저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5배 이하의 임금근로자로 정의되고 있어 통상적인 개념에서의 저임금근로자 개념과 다름
- 동 조사에서의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는 동 조사의 조사목적과 조사의 편의성을 고려한 측면이 큼

2. 최저임금 등 임금분포와 조사대상

-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시급 임금분포와 최저임금의 중위임금에 대비한 상대적 수준 추이는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선정기준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시급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개별 임금항목, 법정유급시간까지 포함한 근로시간 등에 대한 조사상의 제약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에서 활용되는 공식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계함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text{시급} = \text{월평균 임금총액} / \text{월 평균 근로시간} (= \text{주당 평균 근로시간} \times (30.4/7))$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text{시급} = \text{월 통상임금} / \text{월 소정일 근로시간}$. 여기서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우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서 최저임금의 중위임금에 대비한 상대적 수준은 최소 48.4%(2007년) ~ 최대 67.2%(2019년) 평균 55.1%
- 기존 조사대상인 최저임금 1.5배 미만 근로자 비율은 최소 30.7%(2008년) ~ 최대 50.2%(2019년) 평균 37.3%. 최근에 보다 높아짐
- 기존 조사대상인 기준인 최저임금 1.5배의 중위임금에 대한 상대적 수준은 최소 72.5%(2007년) ~ 최대 100.7%(2019년) 평균 82.7%. 최근에 보다 높아짐
- 참고로 상대적 저임금 즉 중위임금의 2/3미만 근로자 비율은 최소 15.8%(2019년) ~ 최대 27.4%(2007년) 평균 22.9%. 최근에 보다 낮아짐. 중위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4.6%로 최저임금 상승률 6.8%에 비하여 낮음

<표 3-1> 최저임금 및 시급 임금분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저임금 (원/시간)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중위대비(%)	48.4	49.1	51.3	48.7	50.0	49.7	49.7	50.9	53.9	55.7	56.2	65.4	67.2	65.9	64.9
중위임금 (원/시간)	7,196	7,675	7,803	8,443	8,635	9,211	9,786	10,234	10,362	10,822	11,513	11,513	12,434	13,034	13,432
최저임금*1.5 (원/시간)	5,220	5,655	6,000	6,165	6,480	6,870	7,290	7,815	8,370	9,045	9,705	11,295	12,525	12,885	13,080
중위대비(%)	72.5	73.7	76.9	73.0	75.0	74.6	74.5	76.4	80.8	83.6	84.3	98.1	100.7	98.9	97.4
모집단 (천명)	16,006	16,258	16,609	17,189	17,715	17,941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최저임금*1.5 미만(%)	32.0	30.7	35.7	32.8	31.3	29.6	31.4	33.6	34.0	37.6	39.8	44.5	50.2	49.5	47.5
상대적저임금 (%)	27.4	26.7	27.1	26.3	26.7	25.5	24.5	24.0	21.3	23.2	23.8	18.0	15.8	17.4	16.1

<표 3-2> 최저임금 및 시급 임금분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저임금 (원/시간)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8,350	8,590	8,720
중위대비(%)	46.2	46.0	49.5	49.1	48.2	46.2	46.2	48.5	55.3	54.9	56.2	57.6	59.5	64.6	63.9
중위임금 (원/시간)	7,538	8,194	8,077	8,375	8,957	9,920	10,526	10,750	10,097	10,982	11,512	13,077	14,024	13,295	13,637
최저임금*1.5 (원/시간)	5,220	5,655	6,000	6,165	6,480	6,870	7,290	7,815	8,370	9,045	9,705	11,295	12,525	12,885	13,080
중위대비(%)	69.3	69.0	74.3	73.6	72.3	69.3	69.3	72.7	82.9	82.4	84.3	86.4	89.3	96.9	95.9
모집단 (천명)	10,864	10,867	11,214	11,889	12,588	12,971	13,471	13,962	14,670	15,354	15,859	15,971	16,307	16,506	16,713
최저임금*1.5 미만(%)	27.3	27.1	31.2	30.5	28.3	25.8	25.3	28.6	36.9	37.0	37.8	38.4	39.7	47.4	46.6
상대적저임금 (%)	25.5	25.0	24.5	24.0	22.9	23.1	22.7	22.0	19.4	18.3	16.0	13.5	10.9	7.1	8.2

- 다음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 최저임금의 중위 임금에 대비한 상대적 수준은 최소 46.0%(2008년)~최대 64.6%(2019년)이며, 평균은 52.8%
 - 기존 조사대상인 최저임금 1.5배 미만 근로자 비율은 최소 27.1%(2008년)~최대 47.4%(2020년) 평균 33.9%. 최근에 보다 높아짐
 - 기존 조사대상인 기준인 최저임금 1.5배의 중위임금에 대한 상대적 수준은 최소 69.0%(2008년)~최대 96.9%(2019년) 평균 79.2%. 최근에 보다 높아짐
 - 참고로 상대적 저임금 즉 중위임금의 2/3미만 근로자 비율은 최소 7.1%(2020년)~최대 25.5%(2007년) 평균 22.9%. 최근에 보다 낮아짐. 중위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4.3%로 최저임금 상승률 6.8%에 비하여 낮음
- 전반적으로 기존 조사대상인 최저임금 1.5배 미만 근로자 비율이 이전과는 달리 특히 최근에는 거의 50%에 근접하고 있음. 이는 최근에 최저임금의 1.5배가 중위임금에 근접한데 기인하고, 조사대상이 확대되어 왔음을 시사함
 - 그러나 본 조사가 시행된 2007년 이후 2021년까지 조사대상인 최저임금 1.5배 미만 근로자 비율은 ‘평균적으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37.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33.9%임

3.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및 임금·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등의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어 다음의 효과를 수반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최저임금(인상)은, 노동시장이 수요독점(monopsony)적인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의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의 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혼재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음(기존 연구들에 대한 고찰은 강창희(2020) 참조)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연구는 바로 '임금분포 상의 누가'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임

- 최저임금(인상)은 제도의 설계 상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임금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용 상승 압박에 처한 사업체는 이들 저임금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할 가능성이 있음

- 과연 임금분포 상 어떤 범위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임금격차 해소에 일조하는지, 또 임금분포 상 어떤 범위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 측면에서 영향 하에 놓이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본 장에서는 최저임금(인상)이 임금불평등(또는 격차)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분포를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소개함

3.1 최저임금(인상)이 임금분포(또는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1) 이정민·황승진(2018)의 연구

- 이정민·황승진(2018)은 인구사회학적 근로자 집단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이 중위임금과 분위별 임금 사이의 차이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음

- 추정 모형

$$\ln w_{i,t}(p) - \ln w_{i,t}(50) = \beta(p) T_{i,t-1} + \alpha_i(p) + \tau_t(p) + u_{i,t}(p) \quad (1)$$

여기서,

$\ln w_{i,t}(p)$ = 집단 i 의 소득분포 $p(\%)$ 분위의 로그 실질 시간당 임금

따라서 종속변수는 p 분위-50 분위 사이의 로그 임금격차

$T_{i,t-1}$ = 최저임금의 적용률(또는 (순)영향률): $(t-1)$ 시점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 하에 있지 않지만 t 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 비율

$\alpha_i(p)$ = 집단별 고정효과

$\tau_t(p)$ = 근로자 집단 전체의 임금분포 변화 추세를 통제하는 연도 고정효과

-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추정치 $\beta(p)$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적용률이 상승했을 때 각 임금분포의 p 분위-50 분위 임금격차에 나타나는 변화

- 만약 적용률의 증가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임금격차를 줄인다면, p 가 50 미만인 경우에는 $\beta(p)$ 가 양(+)의 값을 가짐
- 반면 p 가 50보다 큰 경우에는 $\beta(p)$ 가 음(-)의 값을 가질 때 임금격차가 줄어들

- 데이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 성별(2개 범주)*연령(8개 범주)*교육수준(4개 범주)*근속수준(6개 범주)*사업체 규모(4개 범주)로 나눈 셀을 분석단위로 함

- 분석 기간: 2006년~2016년

- 분석 결과(<표 3-3>)

- 각 셀 추정치 해석: 적용률이 1%p 높아질 경우 중위임금 대비 해당 분위 임금이 (추정치*100)% 만큼 높아짐

-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이 높아질 경우 중위임금 이하 분위에서는 중위임금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빠르게 증가하고($\beta(p)$ 가 +), 중위임금 이상에서는 중위임금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느리게 증가하여($\beta(p)$ 가 -) 전반적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됨
- 특히 상대적 임금상승 속도는 상위분위보다는 하위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실질 최저임금 10% 인상이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상대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경우에도 그 수치는 상당히 작지만 영향의 패턴은 유지됨([그림 3-1])

○ 전반적인 결과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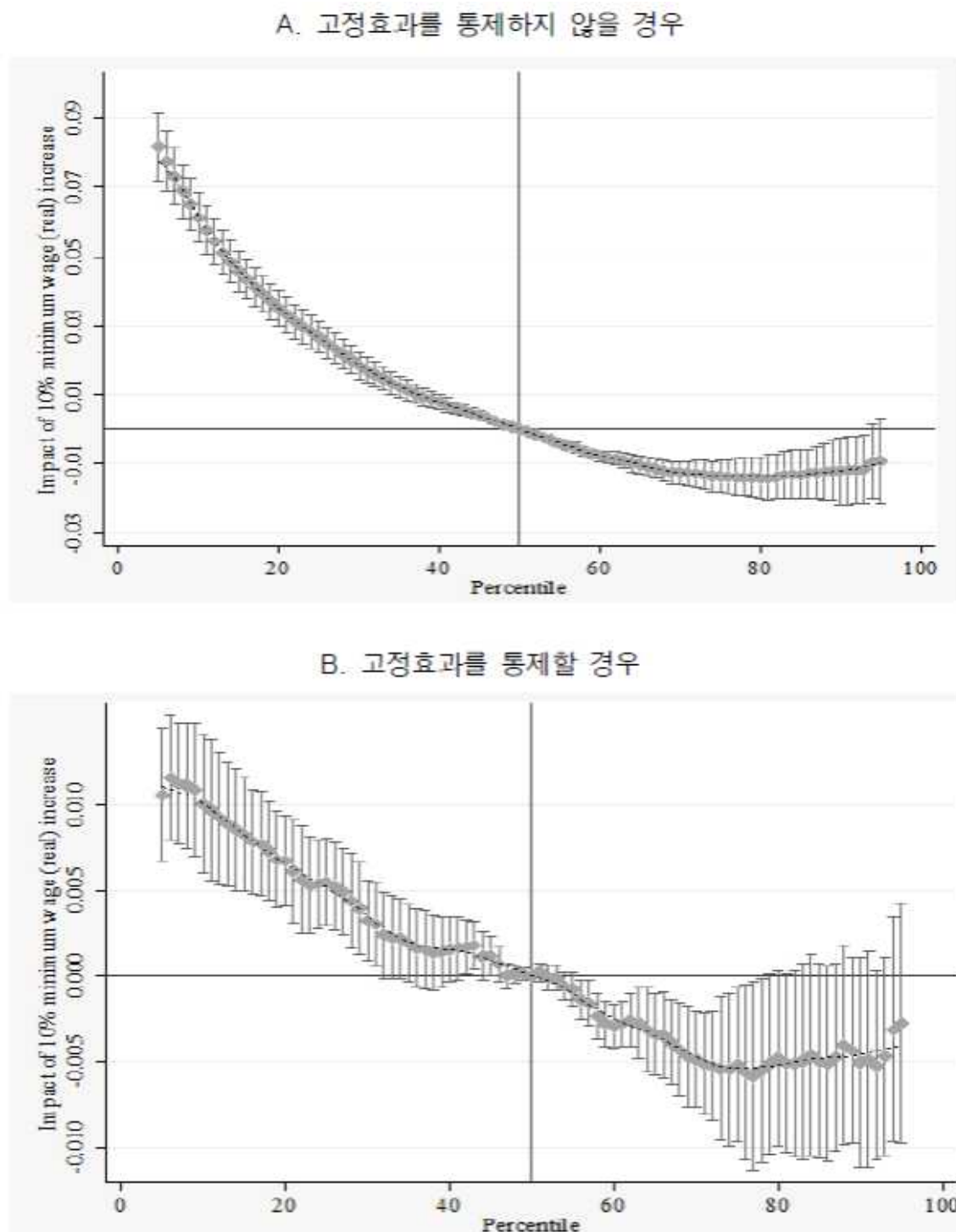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증가함

<표 3-3>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시간당 임금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

	(1)	(2)	(3)
p10-p50	0.0188*** (0.0011)	0.0031*** (0.0006)	0.0038*** (0.0012)
p20-p50	0.0107*** (0.0008)	0.0021*** (0.0004)	0.0022*** (0.0006)
p30-p50	0.0057*** (0.0006)	0.0010*** (0.0004)	0.0009 (0.0006)
p40-p50	0.0024*** (0.0003)	0.0005 (0.0003)	0.0006 (0.0006)
p60-p50	-0.0024*** (0.0002)	-0.0009*** (0.0002)	-0.0013*** (0.0003)
p70-p50	-0.0039*** (0.0005)	-0.0015*** (0.0004)	-0.0023*** (0.0005)
p80-p50	-0.0043*** (0.0010)	-0.0015* (0.0008)	-0.0025** (0.0011)
p90-p50	-0.0037** (0.0015)	-0.0016 (0.0010)	-0.0026* (0.0013)
집단고정효과	No	Yes	Yes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Observations	14297	14297	4397

*출처: 이정민·황승진(2018)의 <표 2>를 인용함

[그림 3-1] 실질 최저임금 10% 인상이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상대임금에 미치는 효과



*출처: 이정민·황승진(2018)의 <그림 5>를 인용함

2) 정진호 외(2011)의 연구

- 정진호 외(2011)에서는 지역(광역시 제외)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 즉 전체 영향률 및 순(=신규)영향률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분위별 임금(p5, p10, p25, p50, p75, p90, p95 등) 및 임금분위수 배율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 추정
 - 분석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998~2008년 전체 임금근로자를 11개 지역(제주 제외)로 세분
 - 분석모형 1: $(\ln P_t - \ln P_{t-1}) = \beta_1 T_{t-1} + \beta_2 (EP_t - EP_{t-1}) + \alpha_i + u$
 - 분석모형 2: $(\ln P_t / \ln P_{t-1}) = \beta_1 T_{t-1} + \beta_2 (EP_t - EP_{t-1}) + \alpha_i + u$
 - . P: 분위수임금(시간당)=월평균 임금총액/월정상근로시간(=주정상근로시간×(30.4/7))
 - . T: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체 영향률 또는 순 영향률로 최저임금 정책효과를 대리
 - . EP: 고용률(=취업자/인구(15+))로 지역별 노동시장 여건 대리변수로 통제변수
 - 분석결과 1: 최저임금 인상은 p50 또는 p90의 임금수준까지 양(+)의 효과를 미침²⁾
 - . 전체 영향률을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50분위 이하의 임금 소득자들의 임금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 신규 영향률을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90분위 이하의 임금 소득자들까지 임금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표 3-4> 최저임금의 임금분위수 변화효과(1998~2008): 고정효과 모형

	전체 영향률			신규 영향률		
p5	0.278	(0.095)	***	0.370	(0.247)	
p10	0.210	(0.071)	***	0.406	(0.183)	**
p25	0.174	(0.076)	**	0.685	(0.188)	***
p50	0.177	(0.083)	**	0.630	(0.207)	***
p75	0.060	(0.080)		0.472	(0.199)	**
p90	0.038	(0.088)		0.498	(0.219)	**
p95	-0.081	(0.110)		0.223	(0.279)	

주: ()안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 이후 원자료

2) 이러한 분석 방법은 Card & Krueger(1995)에서 활용된 방법을 적용한 것인데, 미국 자료를 활용한 Card & Krueger(1995)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적용률 증가가 P10까지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음

- 분석결과 2: 전체 영향률 변수를 활용하였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p10에 대비한 p90의 상대적 임금수준을 낮추는 음(-)의 효과를 보임
그러나 다른 상대적 임금수준(p50/p10 또는 p90/p50)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 3-5〉 최저임금의 임금분위배율 변화효과(1998~2008): 고정효과 모형

	p90/p10			p50/p10		p90/p50	
전체 영향률	-0.063	(0.032)	*	-0.015	(0.026)	-0.042	(0.029)
신규 영향률	0.005	(0.082)		0.058	(0.065)	-0.053	(0.075)

주: ()안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1년 이후 원자료

3) 최근 자료를 활용한 분석

- 본 연구에서도 인구사회학적 근로자 집단별 최저임금 인상의 적용률 즉 전체 영향률 및 순영향률 차이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분위별 임금(p5, p10, p25, p50, p75, p90, p95 등)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를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분석자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2007~2021년 전체 임금근로자를 12개 집단 즉 성(2, 남, 여), 학력(3, 고졸이하, 초대졸, 대졸이상), 연령(4,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등 24개로 세분
- 분석모형: $(\log P_t - \log P_{t-1}) = \beta_1 T_{t-1} + \beta_2 (EP_t - EP_{t-1}) + \alpha_i + u$
 - P: 분위수임금(시간당) =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T: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체 영향률’ 또는 ‘순 영향률’로 최저임금 정책효과를 대리
 - EP: 고용률(=취업자/인구(15+))로 경제성장률 대리변수로 통제변수
- 분석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수준 25분위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대리변수를 전체 영향률로 활용하거나 신규 영향률로 활용할 때 모두 유사하게 나타남

〈표 3-6〉 최저임금 인상이 분위수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2007~2021)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활용

	FE 모형(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전체 영향률			신규 영향률	
p5	0.426	0.146	***	0.104	0.229
p10	0.339	0.102	***	0.286	0.160 *
p25	0.234	0.0096	**	0.393	0.179 ***
p50	0.110	0.089		0.171	0.139
p75	0.009	0.079		0.088	0.123
p90	-0.121	0.094		-0.176	0.146
p95	-0.039	0.102		-0.075	0.159

주: ()안은 표준오차, ***, **, *는 각각 1%, 5%, 10%에서 통계적 유의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상위 계층의 임금수준도 높이고, 임금분포도 압축시킴
 -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spike effect) 최저임금 계층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spillover effect) 직상위 나아가 상위계층 근로자의 임금수준에도 명백히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분위수배율의 변화에서도 관찰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분포를 압축시키고 있음

3.2 최저임금(인상)이 저임금자들의 고용(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1) 이정민·황승진(2018)의 연구

- 이정민·황승진(2018)은 3.1.1의 식(1)의 종속변수를 시간당 임금이 아닌 임금 총액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 실제적인 임금불평등 완화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려면 시간당 임금이 아닌 임금 총액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
 -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상승하였지만 이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한다면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음
 - 임금(총액) = 시간당 임금*근로시간

○ 분석 결과

- 최저임금 인상이 (총액 기준) 임금격차를 오히려 악화시킴: 중위임금 아래에서는 임금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이고, 중위임금 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가짐
- 이유는 근로시간 변화의 영향 때문: 즉,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상쇄하는 것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상대적으로 더 감소시킴에 따라 임금 총액 기준 임금격차가 증가함
- 특히 근로시간(고용의 양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의 감소가 하위 임금분위(특히 20% 이하)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전반적인 결과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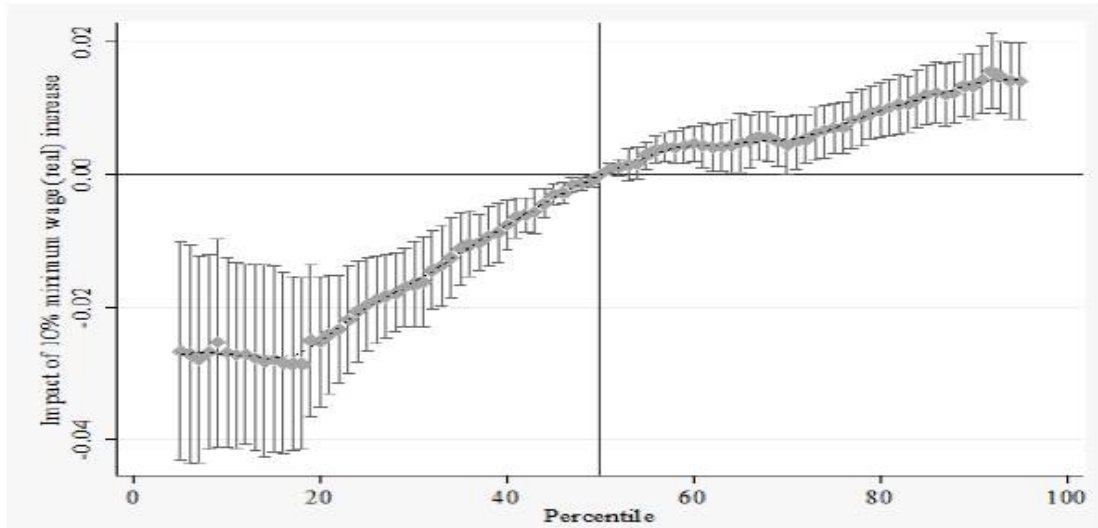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중위임금 이하의 근로자의 고용(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함

<표 3-7> 임금 총액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

	(1)	(2)
p10-p50	-0.0082*** (0.0022)	-0.0110** (0.0054)
p20-p50	-0.0077*** (0.0015)	-0.0108*** (0.0038)
p30-p50	-0.0051*** (0.0010)	-0.0076*** (0.0014)
p40-p50	-0.0023*** (0.0006)	-0.0036*** (0.0006)
p60-p50	0.0014*** (0.0004)	0.0022** (0.0010)
p70-p50	0.0013** (0.0007)	0.0021 (0.0016)
p80-p50	0.0030*** (0.0006)	0.0048*** (0.0014)
p90-p50	0.0041*** (0.0008)	0.0062*** (0.0010)
집단고정효과	Yes	Yes
연도고정효과	Yes	Yes
Observations	14297	4397

*출처: 이정민·황승진(2018)의 <표 5>를 인용함

[그림 3-2] 임금 총액 기준 분위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주: 각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이 수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출처: 이정민·황승진(2018)의 <그림 6>을 인용함

2) 강창희(2020)의 연구

- 집권 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
- 분석 자료 및 기간: 2009~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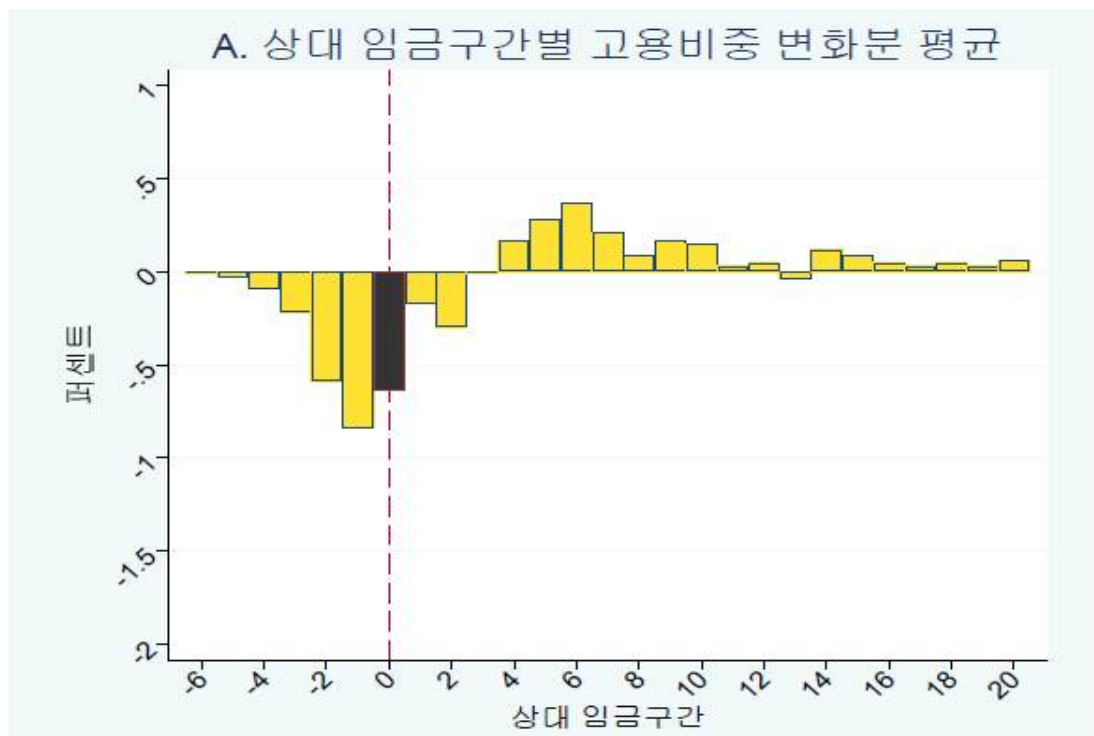
<표 3-8> 임금구간, 실질 최저임금, 각 임금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퍼센트)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실질 최저임금	4379.7	4522.2	4514.0	4561.0	4731.9	4956.8	5246.8	5580.0	5972.1	6285.8	7231.3
임금구간											
1. [0, 2000]	0.12	0.23	0.12	0.10	0.08	0.09	0.10	0.09	0.06	0.02	0.03
2. [2000, 2500]	0.18	0.12	0.18	0.09	0.09	0.09	0.06	0.06	0.05	0.05	0.03
3. [2500, 3000]	0.49	0.26	0.31	0.25	0.11	0.14	0.09	0.08	0.07	0.06	0.04
4. [3000, 3500]	1.19	0.60	0.87	0.67	0.28	0.26	0.17	0.09	0.08	0.10	0.04
5. [3500, 4000]	2.89	2.43	2.11	0.98	0.62	0.52	0.40	0.17	0.18	0.14	0.06
6. [4000, 4500]	3.28	2.36	2.65	2.64	1.44	1.16	0.72	0.30	0.23	0.18	0.06
7. [4500, 5000]	4.06	3.55	3.72	3.39	3.25	3.76	2.60	0.72	0.66	0.43	0.08
8. [5000, 5500]	4.68	3.81	4.46	4.44	3.89	2.93	3.27	1.19	0.66	0.43	0.12
9. [5500, 6000]	4.88	5.18	5.11	4.83	4.45	4.47	4.43	4.03	2.47	1.15	0.23
10. [6000, 6500]	4.56	4.64	5.03	5.39	5.53	5.05	5.10	5.01	4.16	3.42	0.47
11. [6500, 7000]	4.55	4.72	4.62	4.80	4.76	5.07	4.88	4.92	3.72	4.05	4.15
12. [7000, 7500]	4.04	4.44	4.16	4.49	4.72	4.67	5.62	6.11	5.85	3.13	3.96
13. [7500, 8000]	3.92	3.76	4.11	4.20	4.14	4.18	4.41	5.30	5.72	6.60	3.57
14. [8000, 8500]	3.60	3.69	3.77	3.72	4.07	4.07	3.79	4.40	4.51	5.12	4.12
15. [8500, 9000]	3.42	3.75	3.66	3.62	3.52	3.79	3.76	4.37	4.85	5.12	5.58
16. [9000, 9500]	3.33	3.29	3.45	4.01	3.58	3.76	3.97	3.74	3.83	4.37	6.89
17. [9500, 10000]	3.05	3.39	3.40	3.00	3.19	3.42	3.17	3.42	3.76	4.59	5.02
18. [10000, 10500]	2.92	2.97	2.96	3.17	3.03	3.00	2.98	3.26	3.05	3.46	3.41
19. [10500, 11000]	3.02	2.97	2.90	2.64	3.03	3.00	2.80	2.95	3.04	2.96	4.11
20. [11000, 11500]	3.00	2.79	2.60	2.69	2.78	2.78	2.69	2.60	2.79	2.65	3.81
21. [11500, 12000]	2.43	2.45	2.53	2.44	2.48	3.15	3.27	3.22	3.33	3.58	3.74
22. [12000, 12500]	2.28	2.91	2.24	2.65	3.12	2.57	2.59	2.31	3.25	3.30	2.94
23. [12500, 13000]	2.02	2.10	2.26	2.11	2.47	2.14	2.22	3.17	1.91	2.26	2.53
총 고용규모(천명)	10,582	10,778	11,383	11,988	12,431	12,774	13,419	13,999	14,681	15,161	15,404

<표 3-9> 상대 임금구간, 각 임금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퍼센트)의 변화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값	누적값
상대구간												
-6	0.11	-0.10	-0.02	-0.02	0.00	-0.03	-0.01	-0.01	0.01	-0.06	-0.01	-0.05
-5	-0.06	0.06	-0.09	-0.01	0.03	-0.05	-0.08	0.01	-0.04	-0.08	-0.03	-0.08
-4	-0.23	0.05	-0.06	-0.14	-0.02	-0.08	-0.23	-0.07	-0.05	-0.13	-0.09	-0.17
-3	-0.59	0.27	-0.20	-0.40	-0.11	-0.12	-0.42	-0.06	-0.23	-0.35	-0.22	-0.39
-2	-0.46	-0.32	-1.13	-0.35	-0.28	-0.45	-1.89	-0.53	-0.23	-0.30	-0.59	-0.99
-1	-0.92	0.29	-0.01	-1.20	0.51	-1.15	-2.09	-1.56	-1.33	-0.92	-0.84	-1.82
0	-0.51	0.16	-0.32	-0.15	-0.96	0.34	-0.40	-0.85	-0.74	-2.95	-0.64	-2.46
1	-0.87	0.65	-0.01	-0.55	0.02	-0.04	-0.09	-1.20	0.33	0.10	-0.17	-2.63
2	0.31	-0.08	-0.28	-0.37	-0.48	0.05	0.04	-0.26	-2.71	0.83	-0.30	-2.92
3	0.08	0.39	0.35	0.15	0.31	-0.19	0.49	0.42	0.88	-3.02	-0.01	-2.94
4	0.17	-0.10	0.18	-0.04	-0.05	0.95	0.89	0.11	0.61	-1.00	0.17	-2.77
5	0.39	-0.28	0.33	0.23	0.05	0.23	0.60	0.49	0.27	0.46	0.28	-2.49
6	-0.16	0.35	0.09	-0.06	0.00	-0.28	0.60	0.09	0.54	2.52	0.37	-2.12
7	0.09	0.08	-0.05	0.35	0.27	-0.02	-0.23	0.34	0.83	0.43	0.21	-1.91
8	0.32	-0.09	-0.04	-0.10	0.18	0.21	0.25	-0.21	0.40	-0.05	0.09	-1.82
9	-0.04	0.16	0.56	-0.43	0.24	-0.25	0.28	0.09	-0.08	1.16	0.17	-1.66
10	0.35	0.01	-0.40	0.19	-0.03	-0.02	0.15	0.19	-0.14	1.16	0.15	-1.51

[그림 3-3] 상대 임금구간별 고용 비중 변화분 평균값과 누적값



여기서 상대구간은 500원 단위로 설정된 시간당 임금구간이며, <표 3-8>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당해 최저임금이 위치해 있던 구간을 기준구간으로 재설정된 것임

- 연도마다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있으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3구간까지, 즉 최저임금이 위치한 기준 임금구간보다 1,500원이 더 많은 임금구간까지는 근로자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감소함
- 분석기간(2008~2018) 동안 실질 최저임금의 평균이 5,271.1원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대비 1.28배($= (5,271.1 + 1,500) / 5,271.1$) 정도의 임금 분포까지는 고용이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전반적인 결과의 시사점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1.3배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함

제4장 표본설계 개선(안) 검토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설정: 조사대상 선정의 문제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이와 같은 모집단에 대한 표본추출틀은 존재하지 않음
 - 이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추출틀인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으로부터 표본사업체를 추출하면 표본사업체 중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체는 일부이며, 이와 같은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면 조사의 효율성이 저하됨
 -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산업대분류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치우쳐 분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추출 방안이 요구됨
- 현행 조사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의 표본사업체로부터 조사대상 사업체를 추출한 것은 사전 정보로 임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조사하기 위한 목적임
 - 표본사업체에 대한 중복조사에 따른 응답부담이 있지만, 제한된 예산과 표본크기 하에서 이상추출법(two-phase sampling) 방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표본설계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모집단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사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조사의 모집단을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와 그렇지 않은 사업체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표본추출틀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 조사의 모집단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국한할 것인지 여부는 조사결과의 정책적인 활용 목적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 모집단 정의를 반영하여 수정될 수 있을 것임

- 이 조사의 모집단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국한하는 경우라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업종이나 사업체 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표본설계에 반영하여 업종별 표본크기를 결정하여 표본배분 방안을 결정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이 조사의 모집단을 저임금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로 국한하는 경우에 핵심적인 이슈는 저임금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임

2.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범위 확대

- 현행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C, G, H, I, L, N, P, Q, R, S)의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체로 국한하고 있음
- 이 조사의 모집단을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국한하는 경우라도 현행 조사대상 업종과 사업체 규모를 전체 사업체로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 원칙적으로 보면 조사대상 업종과 사업체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업종과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체 표본크기 확대도 필요할 것임
- 현행 표본설계에서 조사대상 업종과 사업체 규모를 제한한 것은 제한된 예산 하에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과 사업체 규모를 중심으로 선정된 것임
- 조사대상 사업체의 업종을 현행 조사와 마찬가지로 제한을 둘 것인지,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규모로 제한을 둘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

3. 표본크기, 층화, 표본배분, 가중치 산출 및 추정 관련

- 「최저임금 적용효과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는 통계청 KOSIS를 통해 일부 문항에 대해 결과표를 제공하고 있음

[KOSIS 결과표 제공 목록]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	
☞ 응답사업체 구성(사업체규모별)	수료기간 년 2010~2020 ⓘ ⓘ
☞ 응답사업체 구성(업종별, 9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4~2020 ⓘ ⓘ
☞ 응답사업체 구성(업종별, 8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0~2013 ⓘ ⓘ
☞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사업체규모별)	수료기간 년 2010~2020 ⓘ ⓘ
☞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업종별, 9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4~2020 ⓘ ⓘ
☞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업종별, 8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0~2013 ⓘ ⓘ
☞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사업체규모별)	수료기간 년 2010~2020 ⓘ ⓘ
☞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업종별, 9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4~2020 ⓘ ⓘ
☞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이유(업종별, 8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0~2013 ⓘ ⓘ
☞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업종별, 9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4~2014 ⓘ ⓘ
☞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정도(업종별, 8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1~2013 ⓘ ⓘ
☞ 임금결정에 대한 최저임금 영향 여부(업종별)(2010)	수료기간 년 2010~2010 ⓘ ⓘ
☞ 최저임금제도 준수여부(사업체규모별)	수료기간 년 2010~2014 ⓘ ⓘ
☞ 최저임금제도 준수여부(업종별, 9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4~2014 ⓘ ⓘ
☞ 최저임금제도 준수여부(업종별, 8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0~2013 ⓘ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준수여부(사업체규모별)	수료기간 년 2010~2014 ⓘ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준수여부(업종별, 9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4~2014 ⓘ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준수여부(업종별, 8차 개정)	수료기간 년 2010~2013 ⓘ ⓘ
☞ 임금결정시기(사업체규모별)(2010)	수료기간 년 2010~2010 ⓘ ⓘ
☞ 임금결정시기(업종별)(2010)	수료기간 년 2010~2010 ⓘ ⓘ

- 이 조사의 통계작성 단위는 산업대분류 구분과 사업체 규모 구분임. 따라서 조사대상 업종과 사업체 규모가 늘어나면 전체 표본크기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임
 - 업종별 통계작성이 필요하고 주요 공표항목이 모비율 추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총화에 사용되는 변수로 업종 및 사업체 규모 구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업종 내에서 사업체 규모별 표본배분 방법으로 제공된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각 업종 내에서 사업체 규모 구분에 대해서 제공된 비례배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체 규모별 추정결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모집단 특성 추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은 적합함
 - 사업체 기준의 가중치와 근로자 기준의 가중치를 각각 산출하여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제5장 조사표 구성 및 조사체계 변경안 검토

1. 조사표 구성 검토³⁾

1.1 전반적인 의견

1) 근로자 응답대상

- ‘조사표 작성방법’에 따르면 조사대상 근로자 수는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체 대상 조사표(문2, 문3)는 일용/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음 (아래 상자 참고)

↳ 응답대상 검토 및 일치하도록 구성

< 참고: 근로자 선정기준 >

• 조사대상 근로자 수는 귀사의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

- 정규·비정규 여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중에서 선정

사업체 규모 (상용근로자 수 기준)	4명 이하	5~9명	10~99명	100~299명
조사대상 근로자 수	최대 4명	최대 5명	최대 7명	최대 10명

- *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까지 포함
- 선정요령: 성별과 직종을 골고루 안배하여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부터 선정**하되, 사업체 규모별 선정 가능 근로자 수 범위를 준수하여 **가능한 최대인원을 조사**

- 근로자 응답대상자 선정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사업체 조사표에서 관련 정보를 도출할 필요 있음

↳ 예) 사업체 조사표 문3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구분보다는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수를 확인: 이 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 대상 조사표의 응답대상(임금이 낮은 근로자 수) 확인

< 참고: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 사업체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수를 결정

- 사업체 규모에 따라 조사대상 근로자 수가 결정되면, 성별과 직종을 골고루 안배하여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부터 조사대상 근로자 수에 맞춰 선정

3) 통계개발원의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수록함

2) 질문내용

-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변화(고용, 이윤 등)를 질문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결과를 구별하기 어려움

5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다음 항목별로 변동이 있었습니까?

항목	보기		
1) 순이익(이윤)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2) 제품(서비스) 가격	☐ ① 인상되었다	☐ ② 인하되었다	☐ ③ 영향이 없었다
3) 인건비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4) 신규채용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5) 근로시간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 사실과 원인(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 구분 필요

3) 질문표현

- ‘귀사’에 해당하는 질문과 ‘국가 전반적인 경영’에 해당하는 질문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 제시 필요
- ↳ ‘귀사’에 해당하는 질문은 질문표현에 ‘귀사에서는’ 등의 표현 명시

1.2 사업주 대상 조사표

○ 사업체 현황

A 사업체 현황

기 본 현 황

* 주요 생산품목(재화 또는 서비스)이 다수인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품목을 기입

업 체 명			
소재지(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주요 생산품목 (재화 또는 서비스)*		노조유무	☐ ① 있음 ☐ ② 없음
작성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사업체의 정확한 정보 확인 및 자료연계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 등록번호) 항목 추가 고려

○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액과 인상액 >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일 환산액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주40시간 기준	(인상액)	주44시간 기준	(인상액)
'18년	7,530	↑ 1,060	16.4%	60,240	↑ 8,480	1,573,770	↑ 221,540	1,701,780	↑ 239,560
'19년	8,350	↑ 820	10.9%	66,800	↑ 6,560	1,745,150	↑ 171,380	1,887,100	↑ 185,320
'20년	8,590	↑ 240	2.87%	68,720	↑ 1,920	1,795,310	↑ 50,160	1,941,340	↑ 54,240
'21년	8,720	↑ 130	1.5%	69,760	↑ 1,040	1,822,480	↑ 27,170	1,970,720	↑ 29,380
'22년	9,160	↑ 440	5.05%	73,280	↑ 3,520	1,914,440	↑ 91,960	2,070,160	↑ 99,440

< 최저임금 감액적용: 최저임금액의 90% >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3개월 이하 수습 중 10% 감액)			일 환산액 8시간 기준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주40시간 기준		주44시간 기준	
'18년	6,777			54,216		1,416,393		1,531,602	
'19년	7,515			60,120		1,570,635		1,698,390	
'20년	7,731			61,848		1,615,779		1,747,206	
'21년	7,848			62,784		1,640,232		1,773,648	

* 최저임금 산입범위(2021년 기준)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② 법정 유급주휴수당
 ③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초과분
 ④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 아래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①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②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1,822,480원×15%=273,372원) 해당 부분
 ③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1,822,480원×3%=54,674원) 해당 부분
 *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산입됨

- 제시된 정보(매년 인상률 변화 등)가 응답(예,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황표에 제시된 정보의 범위 검토

○ 문3

3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을 받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몇 명입니까? (전체근로자가 아님에 유의) * 귀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파견 혹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 수준을 받는 근로자 수		'21.11.15. 현재	'20.12월말
	정 규 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합 계		명	명
여 자		명	명

- 응답란 중 '20.12월말의 기준 시점 인식 오류 가능성 있음
: 시간 흐름 순으로 응답란 제시 고려 → '20년 12월말 - '21년 현재 순
- 정규직/비정규직 구분보다는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수 확인(전반적인 검토의견 참고)

- 성별 근로자 수 구분이 필요하다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근로자 수도 함께 질문하여 합계를 확인할 필요 있음

○ 문3-1

3-1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 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 없음
1)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 1	☐ 2	☐ 3	☐ 4	☐ 5
2)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 1	☐ 2	☐ 3	☐ 4	☐ 5
3)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 1	☐ 2	☐ 3	☐ 4	☐ 5

▪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 (항목번호) 항목번호를 독립질문으로 구성(문4): 문3의 응답에 따라 응답대상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하위질문으로 볼 수 없음
- (응답보기 척도: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 정도의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130원)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 인상을 적용 고려
- (질문표현) 질문은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는데, 응답내용은 실제 인상 여부/정도를 답변할 것으로 보임
 - ↳ 해당 근로자가 올해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었는지 질문하는 것이 적절

○ 문4

4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 ②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
☐ ③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했다
☐ ④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했다

- 고용의 증감 여부를 질문한 후, (고용이 감소했다고 응답시) 하위질문으로 감소 원인을 질문하는 방안 고려

○ 문5, 5-1

5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다음 항목별로 변동이 있었습니까?			
항목	보기		
1) 순이익(이윤)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2) 제품(서비스) 가격	☐ ① 인상되었다	☐ ② 인하되었다	☐ ③ 영향이 없었다
3) 인건비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4) 신규채용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5) 근로시간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5-1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임금산정 방식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 ① 변화가 없었다 ☐ ② 수당이나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환(포함)하였다 ☐ ③ 호봉급, 직무급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 ☐ ④ 기타()	

- 항목별 변동에 대한 응답과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혼합하여 응답할 가능성 있음

↳ 변동에 대한 사실 확인과, 변동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인지 질문을 구분하는 방안 고려

- (항목번호) 문5-1을 하위항목이 아닌 독립적인 항목으로 보임

↳ 항목번호 수정

○ 문8

8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근로자의 생계비	☐ ②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 ③ 노동생산성	☐ ④ 소득분배 상황
☐ ⑤ 경제성장률	☐ ⑥ 물가상승률
☐ ⑦ 실업률 등 고용사정	☐ ⑧ 기업의 지불능력
☐ ⑨ 기타()	

-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복수응답 개수를 제한하여 순위 질문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몇 개까지 선택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

○ 문12

12	귀하의 회사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현물급여(금전지급 제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숙소 제공 ☐ ③ 통근차량 운행 ☐ ⑤ 기타()	☐ ② 식사 제공(식당운영 포함) ☐ ④ 상품권 지급 ☐ ⑥ 제공하는 현물급여 없음

- 문12와 문12-1은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 문12와 문13 질문 순서 변경 고려

○ 문12-1

12-1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이 됩니까?
☐ ① 제공된다 ☐ ② 제공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 근로자 없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이 갑자기 제시되어 자연스럽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 질문 후(하위질문이 아닌 독립질문 구성),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하위질문으로 숙소제공 여부 질문

: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 문2 다음순으로 배열하는 방안 고려

○ 부가조사표

참고													
○ 사업주께서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8,720원 × 1.5배 = 13,080원)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작성 - '㉓ 임금액'을 '㉔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5배(시급 13,080원) 이하인 근로자가 조사 대상(초과하면 제외) - '㉔ 근로자 번호'는 근로자 조사표 표지 오른쪽 위에 있는 '근로자 번호'와 같아야 함 ○ 작성 요령 - ㉔ 지급주기: 근로계약 시 정해진 임금 지급주기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 - ㉓ 임금 액: 근로자의 임금 지급주기 기준에 따른 임금액을 기재 • 연봉제인 경우는 기본 연봉총액(성과연봉, 수당, 퇴직금 제외)을 월할 계산하여 '월급제'로 표시하고 임금액 기재 *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8시간×5일+8시간)×4.345주)이 아닌 경우, 월 환산액은 '최저시급(8,720원) × ㉓ 임금액 × ㉔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적용 • 임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으로 기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background-color: #e1f5fe;">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항목</th> <th style="background-color: #e1f5fe;">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th> </tr> <tr> <td>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td> <td>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td> </tr> <tr> <td>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td> <td>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등</td> </tr> <tr> <td>법정주휴수당은 포함</td> <td>가산임금은 제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약정 유급휴일 임금 등은 제외</td> </tr> <tr> <td>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td> <td>현물로 제공되는 임금(식사 제공, 기숙사 제공 등)은 제외</td> </tr> <tr> <td>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15%(273,372원)를 초과 금액과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3%(54,674원)를 초과 금액은 포함</td> <td>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금액은 불포함</td> </tr> </table>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항목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등	법정주휴수당은 포함	가산임금은 제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약정 유급휴일 임금 등은 제외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현물로 제공되는 임금(식사 제공, 기숙사 제공 등)은 제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15%(273,372원)를 초과 금액과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3%(54,674원)를 초과 금액은 포함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금액은 불포함	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에서 상여금 월 500,000원, 복리후생비 월 200,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 상여금 226,628원(500,000-273,372원), 복리후생비 145,326원(200,000-54,674원)은 '㉓ 임금액'에 포함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항목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등												
법정주휴수당은 포함	가산임금은 제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약정 유급휴일 임금 등은 제외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현물로 제공되는 임금(식사 제공, 기숙사 제공 등)은 제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15%(273,372원)를 초과 금액과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3%(54,674원)를 초과 금액은 포함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금액은 불포함												
- ㉔ 근로시간: ㉓ 임금액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임금산정의 기초인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													

- <참고> 내용 중 응답대상자 및 작성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을 앞부분(6페이지 위쪽)으로 이동

1.3 근로자 대상 조사표

○ 문7~8

7	귀하 가구의 올해('21년) 10월 총 소득(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은 모두 얼마입니까?		
※ 세금 납부 전			
☐ ① 80만원 미만	☐ ② 80~100만원 미만	☐ ③ 100~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 ⑤ 200~300만원 미만	☐ ⑥ 300~400만원 미만	
☐ ⑦ 400~500만원 미만	☐ ⑧ 500만원 이상		
▪ 이전소득: 생산활동에 공헌한 대가로 지불된 소득이 아닌 정부 또는 기업이 반대급여 없이 무상으로 지불한 소득(사회보장급여, 보조금, 중여 등) ▪ 비경상소득: 퇴직금, 사고보상금, 경조소득 등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8	귀하의 가구에서 올해('21년) 10월에 지출한 총 가계지출액(총 가구원의 모든 지출 포함)은 모두 얼마입니까?		
※ 현금지출 외에 현물지출도 포함			
☐ ① 80만원 미만	☐ ② 80~100만원 미만	☐ ③ 100~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 ⑤ 200~300만원 미만	☐ ⑥ 300~400만원 미만	
☐ ⑦ 400~500만원 미만	☐ ⑧ 500만원 이상		
▪ 가계지출: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소비지출(식료품비, 의류·신발 등 구입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교양·문화비, 외식·숙박비)과 비소비지출(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납부비용 등) 모두 포함			

- 가구 전체 소득 및 지출 금액으로 최대 범위(500만원 이상)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임

○ 문13

13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근로자의 생계비	☐ ②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 ③ 노동생산성	☐ ④ 소득분배 상황	
☐ ⑤ 경제성장률	☐ ⑥ 물가상승률	
☐ ⑦ 실업률 등 고용사정	☐ ⑧ 기업의 지불능력	

-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질문하고 있으므로, 복수응답 개수를 제한하여 순위 질문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 몇 개까지 선택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답하도록 지시

○ 문19

19	귀하의 사업장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매년 고지하고 있습니까?		
☐ ① 고지하고 있다	☐ ② 고지하지 않고 있다	☐ ③ 잘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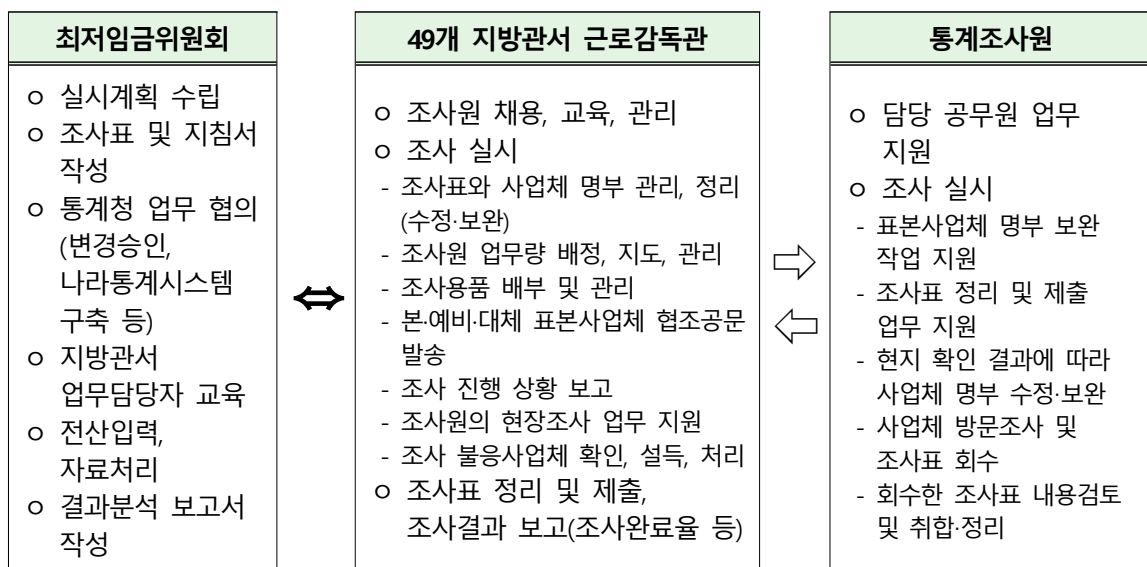
- 사업장의 고지여부를 근로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사업장에서는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 있음

2. 조사체계 변경안 검토

2.1 현 조사체계 적정성 검토

- 49개 지방관서에서 실시계획 수립, 조사원 채용·교육·관리, 현장조사관리*를 각각 수행하여 행정부담 과중 및 업무량, 조사의 정확성 측면에서 지역별 편차가 발생
 - 표본배분에 따라 지방관서별 업무부담 편차 발생('21년 기준 최소 6개소, 최대 172개소)
 - 자료수집 결과 지방관서별 할당된 표본 대비 실제 회수된 조사표가 많은 지청이 '20년 13개, '21년 16개로 표본대체 지침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사지침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없거나 불응·불능으로 조사 불가능할 경우에 표본대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사성공 표본은 목표표본보다 작거나 같아야 함
 - 예비표본이 아닌 현장에서 섭외하여 조사한 표본으로의 표본대체는 조사자의 편의에 의해 조사된 표본이므로 대표성이 없음
 - 최근 3년 근로자조사의 목표 표본(10,000명) 대비 회수 표본 평균 비율이 55.7%로 낮은편인데도 불구하고 회수한 조사표 중 분석 불가능한 조사표가 발생(11.3%)
 - 현장조사 후 별도 기관에서 전산입력, 전산처리를 시간을 두고 각각 따로 실시하여 응답의 정확성이나 성실도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누락값에 대한 보완조사나 재조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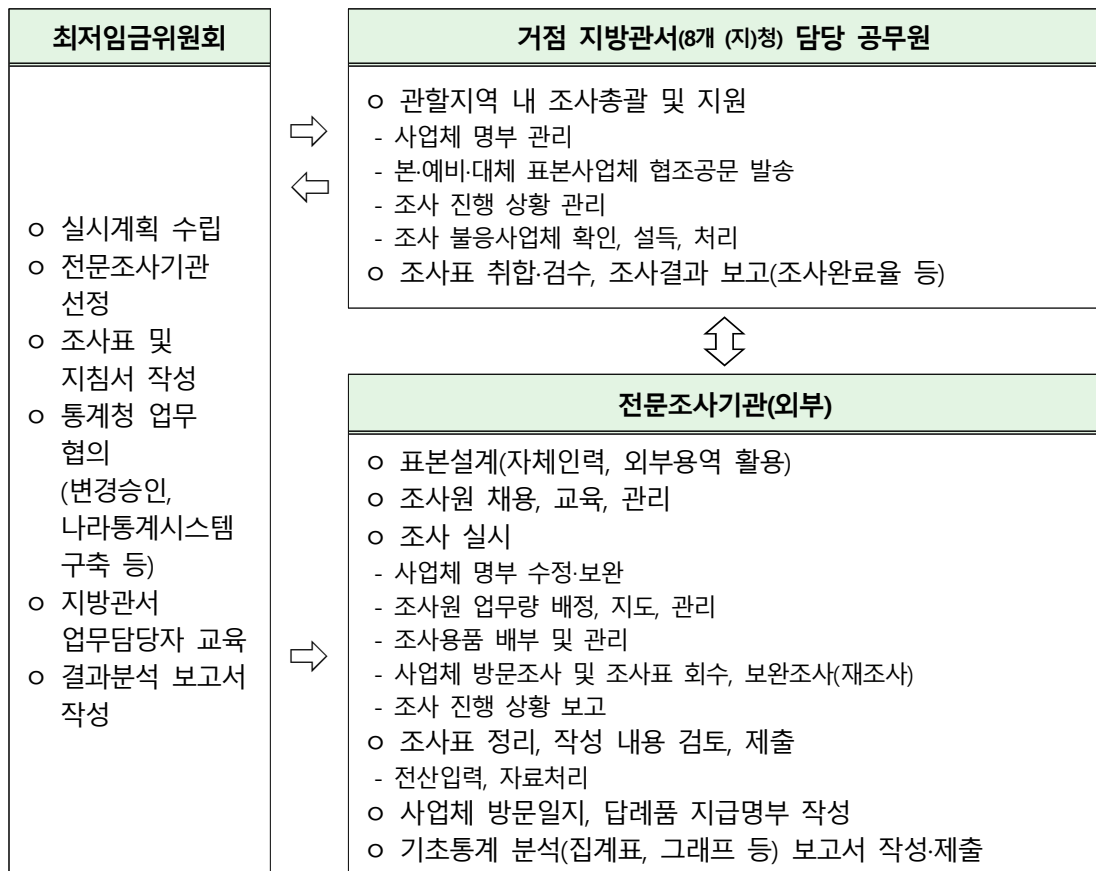
[조사체계(현행)]



○ (개선안)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체계 개선이 필요

- (행정 절차 간소화) 각 지방관서별 각각 실시하는 계획수립, 조사원 채용·교육을 조사총괄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
- (조사 효율화) 근로감독관 업무 경감 및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은 조사 진척률 관리 및 불응 사업체 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 조사기관은 조사지침을 준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률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을 여러 번 접촉 필요(최소 2회 이상 방문, 조사관리자·담당공무원과 협력)
- 전문 조사기관에서는 조사표 회수 후 바로 전산입력, 내용검토, 전산처리하고 필요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항목 무응답 및 분석 불가능 조사표를 최소화
- 단,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청 훈령 제527호, 통계조사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원 교육 관련 사항(지침서, 사례집 등), 조사표 원본, 조사결과 원자료, 마이크로데이터 등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함

[조사체계(개선안)]



2.2 조사지침서 개선

1) 조사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조사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같은 사업체를 조사하더라도 조사원에 따라 다른 조사대상을 조사할 가능성이 높음

* **성별과 직종을 골고루 안배**하여 임금이 가장 낮은 근로자부터 선정

- 조사대상에 상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나 사업체별 조사대상 근로자 수 기준에서는 상용근로자 수 보다 적은 수의 근로자를 조사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체 규모별로 허용하는 조사대상 수 차이가 크지 않음(p35 참고: 근로자 선정기준)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2020년 조사자료)에서도 개별 사업체별로 최저임금(8,590원)의 1.5배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는 평균 7.88명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저임금 근로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체별 최저임금 1.5배 이하 근로자 수의 평균(명)]

* '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정액급여÷소정실근로시간) 가공

사업체분류	사업체 규모(상용근로자)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전체
C. 제조업	1.08	1.29	2.89	7.85	20.82	32.29	8.12
G. 도매·소매업	1.80	1.68	3.41	6.97	19.67	40.49	7.28
H. 운수업	0.95	1.25	2.68	6.85	22.44	35.88	6.22
I. 숙박·음식점업	1.74	2.68	6.37	13.35	33.22	69.18	8.09
L. 부동산·임대업	1.46	1.91	5.25	11.73	26.55	28.84	7.69
N.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업	1.46	1.46	2.94	6.86	23.27	47.60	5.42
P. 교육서비스업	0.74	1.37	4.31	9.53	9.99	24.79	4.86
Q 보건업 사회복지	1.86	4.04	5.39	11.41	29.80	64.05	14.66
R 예술·스포츠 여가	1.60	1.79	4.52	10.77	27.35	43.42	7.13
S. 협회·단체 수리·기타개인	1.12	1.52	4.80	11.02	20.65	27.91	8.12
전체	1.31	1.77	4.07	9.55	23.27	39.47	7.88

*출처: 한국조사연구학회(2021)에서 인용

- (개선안) 최저임금을 받는 평균 근로자 수는 상용 근로자 수 30~99명, 100~299명 구간에 많이 분포하므로 10~99명 구간을 10~29명, 30~99명으로 세분화한 후 30~299명 구간의 선정 가능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명확한 조사 우선순위 기준을 설정

2) 표본대체 지침

- 해당 표본은 산업대분류 및 사업체 규모로 층화되어 있으므로 표본대체는 동일한 층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나, 조사지침서 내에 수록된 표본 대체 요령에서 다른 층과 표본 대체(③)를 하거나, 조사자가 임의로 표본추출틀 외의 사업체 표본을 선정하도록 안내(④)하고 있어 조사된 표본의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발생함
- (개선안) 원표본 외 대체 표본을 준비하여 단위 무응답 발생 시 명확한 표본대체지침에 따라 표본 대체하여 조사
 - 원표본과 층화변수(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 및 정렬변수(시도, 시군구 등)가 동일하면서 가장 가까운 표본 활용
 - 표본 명부에서 대체 전 사업체에 대체유형에 해당하는 코드(전입, 휴업, 폐업, 소재불명, 대상외, 중복, 합병, 응답불응, 기타 등)를 입력하고 대체 후 명부에 몇 번째 대체 표본인지 표시
 - 조사 대상이 계속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리자·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최소 2회 이상 통화·방문하여 설득(조사관리자, 담당 공무원과 협력)
 - * 응답회피, 상습적·고의적 응답지연, 전화통화 회피(3회 이상) 등 묵시적 거부인 경우 지방관서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불응으로 처리 가능
 - 전체 목표 표본 수 보다는 층별 목표 표본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본을 관리

(현행) 표본 대체 및 명부 보완 요령

■ 표본 대체 요령 (순서)

- ① 원 표본의 동일 산업(대분류), 동일 규모(상용근로자 수)의 예비표본으로 대체
- ② 동일 산업에서 규모가 한 단계 낮은 예비표본으로 대체
- ③ 유사한 산업, 유사한 규모의 예비표본으로 대체
- ④ 예비표본에서 대체 불가능한 경우는, 현장조사로 대체

※ 지방관서별로 사업체 목표 수는 100% 조사 완료해야 하며, 근로자는 목표 수 대비 60~70% 이상 완료해야 함

(개선 예시) 표본 대체 및 명부 보완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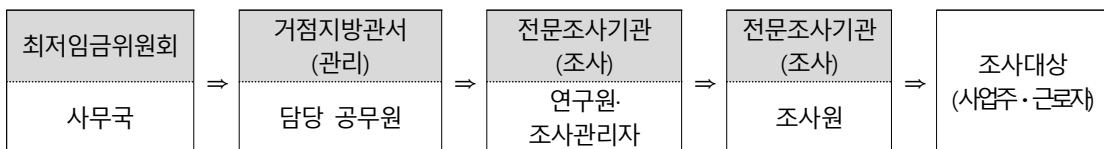
■ 표본 대체 요령 (순서)

- 표본 사업체가 전출, 합병·합산, 산업분류 변경, 폐업, 응답불응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체 대체
- ① 변동발생한 원 표본과 동일 시도 / 시군구 내, 동일 산업(대분류), 동일 규모(상용 근로자 수)의 예비표본으로 대체
- ② 동일 산업에서 규모가 한 단계 낮은 예비표본으로 대체
- * 표본(최초) 설계 시점의 상용근로자 수를 이용할 경우 기존사업체와 대체사업체 간의 조사상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지확인 및 유선확인을 통하여 조사가 가능 여부, 대체전 사업체와 동일 증인지 확인 후 대체조사 실시

※ 지방관서별로 사업체 목표 수는 100% 조사 완료해야 하며, 근로자는 목표 수 대비 60~70% 이상 완료해야 함

3) 조사체계 변경에 따른 조사지침서 현행화

○ 조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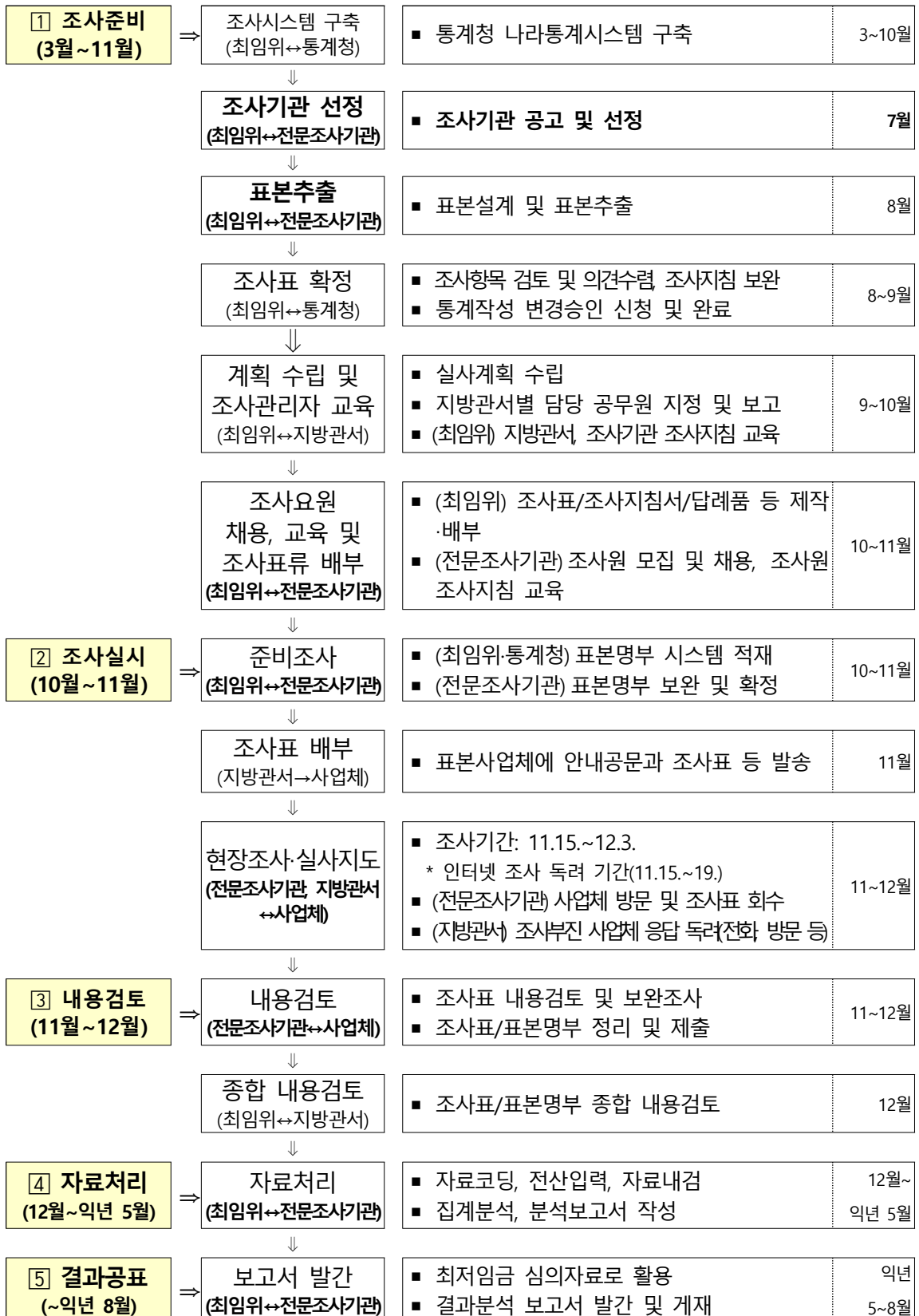
○ 조사담당자의 수행업무(예시)

(거점지방관서) 담당 공무원	
· 관할지역 내 조사총괄 및 지원 · 사업체 명부 관리 · 본·예비·대체 표본사업체 협조공문 발송	· 조사 진행 상황 관리 · 조사 불응사업체 확인, 설득, 처리 · 조사표 취합·검수, 조사결과 보고(조사완료율 등)

(전문 조사업체) 연구원·조사관리자	
< 조사원 채용, 교육, 관리 > · 조사원 업무량 배정 · 조사원 근무 상황 점검 · 조사원의 조사 업무 진행률 파악 및 거점지방관서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 조사 지도 < 기타 > · 담당 공무원 업무 지원	< 조사 관리 > · 인터넷 조사 및 현장 조사 관리 · 조사표와 사업체 명부 관리, 정리(수정·보완) · 조사용품 배부 및 관리 · 조사표 정리 및 제출 < 내용검토, 분석 > · 조사 내용검토, 조사표 등 정리·제출 총괄 · 전산처리 및 기초통계 분석(집계표, 그래프 등) 보고서 작성

(전문조사업체) 조사원	
· 인터넷 조사 중도 포기 사업체 등의 입력 내용 수시 확인, 응답 완료 독려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회수 · 방문조사 이력 및 답례품 지급 명부 작성	· 조사 실적 및 특이사항 보고 · 조사표 입력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 조사업무 흐름도(예시)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포괄 범위

-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포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유일한 정답은 없음
 - 그 이유는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포괄 범위 설정을 위한 이론이나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stakeholder)마다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 합리적인 포괄 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범위 설정의 기준 또는 원칙을 세우고, 실증적인 분석 결과들을 참고하여 방안들을 마련하고, 각 대안들의 장단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적으로 선호되는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함

1.1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 포괄 범위 설정의 네 가지 기준

- 객관성
 - 일반적으로 통용·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 일관성(시계열적 안정성)
 - 시기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일관되게 설정되어야 함
 - 목적 부합성
 - 조사의 특수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야 함
 - 누가 최저임금(인상)의 영향을 받는 집단인가?
 - 조사의 용이성
 - 조사 표본이 수월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 각 기준들이 서로 상충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개념은 중위임금의 2/3 이하 임금근로자이지만(객관성 만족),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2/3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따를 경우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대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통계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됨

⇒ 따라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저임금 근로자 포괄 범위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장단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1.2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 선정기준(안)

1) 제1안: 현행 유지 -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근로자

○ 근거

- 현재까지 활용되어 왔던 기준 유지

○ 장점

- 통계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임
- 지금까지의 조사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음

○ 단점

- 최저임금액의 1.5배가 중위임금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액의 1.5배 근처의 임금근로자들이 과연 저임금 근로자에 부합하는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조사대상 근로자의 포괄 범위를 최저임금과 연동시킬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변동하게 되면 조사대상 근로자의 포괄 범위도 크게 변동하게 되며, 최저임금의 1.5배가 중위임금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제2안: 중위임금(P50) 이하 근로자

○ 근거

- 최저임금(인상)이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시켜 임금격차(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이정민·황승진, 2018; 정진호, 2011)
-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들의 고용(근로시간으로 측정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이정민·황승진, 2018)

○ 장점

- 중위임금은 임금분포 상의 지표로서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지표이며, 일반인들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지표임(즉, 객관성 기준에 부합)
- 최저임금액과 연동시키는 현행 방식에 비해 통계의 변동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됨

○ 단점

- 중위임금 근처의 근로자들이 과연 저임금 근로자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시될 수 있음
-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1.5배와 중위임금 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긴 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의 경우 통계의 과거와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완벽하게 확보할 수는 없음

3) 제3안: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 근거

-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는 국제 비교(OECD)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저임금 근로자 개념임
-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고용(근로시간)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1.3배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라는 연구 결과(강창희, 2020)
- 최저임금(인상)의 상대임금(증가)에 대한 효과가 임금분포의 하위 20분위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이정민·황승진, 2018)
- 최저임금(인상)의 고용(근로시간) 감소 효과가 임금분포의 하위 20분위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이정민·황승진, 2018)

○ 장점

- 저임금의 포괄 범위가 임금분포의 하위에서 협소하게 설정되므로 ‘저임금’ 근로자의 개념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

○ 단점

- 현행 포괄 범위와 저임금의 범위가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통계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조사 모집단의 범위도 현재보다 축소되어 조사대상 표본추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실제 조사에서도 저임금 근로자라는 ‘낙인효과’ 때문에 단위 무응답 및 항목 무응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2.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체 규모

2.1 조사대상 업종

- 저임금 근로자는 모든 업종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대상 업종을 거의 전 업종으로(기존 10개 업종에서 17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업종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아우르는 통계를 작성한다는 취지 자체는 타당함
- 다만, 조사대상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업종마다 저임금 근로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수가 적은 업종의 경우 조사대상 사업체 추출이나 모집단 추정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표 6-1>~<표 6-3>은 저임금 근로자의 기준을 달리할 때 업종별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통상적인 저임금 근로자 개념(중위임금의 2/3 이하) 하에서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모든 업종에서 크게 감소한(<표 6-3>) 반면, 중위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근로자의 비중은 반대로 상당폭 증가하였음(<표 6-1>과 <표 6-2>)
 -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분포가 지속적으로 압축되어 왔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결과임
 - 중위임금이나 최저임금액의 1.5배를 기준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살펴볼 경우 최근에는 업종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개선안에서 제안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포함 업종(<표 6-1>~<표 6-3>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업종들)의 경우 여전히 기존 조사대상 업종에 비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낮음

〈표 6-1〉 업종별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농림어업	24.4	22.6	24.3	22.3	19.8	24.9	31.4	34.5	36.1	35.2	40.8	48.1	44.2
B.광업	12.2	13.3	11.1	11.3	11.2	14.7	20.5	21.1	17.8	20.9	23.6	31.1	30.5
C.제조업	27.4	26.6	24.0	21.4	19.9	22.1	29.9	30.1	31.6	31.0	33.1	42.0	41.5
D.전기가스업	4.4	4.4	3.3	2.8	2.9	1.7	4.2	4.8	5.1	4.6	6.2	8.5	8.2
E.폐기물환경	20.4	18.9	19.1	19.7	15.9	16.7	24.3	26.2	25.2	23.9	23.9	36.0	30.7
F.건설업	14.1	13.6	11.8	11.7	12.1	12.1	18.6	18.0	16.9	17.2	19.2	23.0	22.2
G.도소매업	38.6	36.8	36.9	34.3	34.7	37.1	45.7	44.9	44.1	45.5	46.1	53.1	52.0
H.운수업	38.9	38.8	31.6	30.1	30.3	32.4	36.5	39.1	37.6	41.0	41.0	49.6	46.8
I.숙박음식업	69.4	70.9	68.1	60.7	52.6	66.3	72.9	72.6	73.1	79.3	81.4	82.8	82.7
J.정보서비스	11.0	9.8	10.2	10.4	10.7	10.1	14.5	15.6	17.1	15.1	15.3	21.6	22.6
K.금융보험업	14.3	14.9	14.2	17.2	16.2	17.7	26.4	23.4	28.7	22.7	18.6	22.1	20.7
L.부동산임대	57.6	57.0	52.1	50.0	48.0	55.3	62.7	60.7	58.0	56.6	58.8	66.0	67.0
M.기술서비스	10.7	9.9	9.0	8.1	7.6	8.6	13.9	15.0	14.6	12.7	14.6	22.5	21.6
N.사업지원	32.8	26.8	28.9	26.4	26.2	30.0	40.9	41.2	43.0	40.4	40.4	53.5	54.3
P.교육서비스	19.0	19.4	16.1	13.5	13.2	14.3	23.1	27.3	26.5	29.3	30.3	38.5	38.9
Q.보건복지	36.4	35.8	30.7	26.1	29.4	34.7	47.2	48.8	50.1	51.6	51.4	64.9	64.5
R.예술여가	51.3	41.3	46.5	39.6	40.6	46.9	52.0	52.7	54.6	59.1	60.9	66.1	64.4
S.기타서비스	37.5	39.1	38.7	33.2	34.3	36.9	51.0	51.6	51.5	54.3	56.2	59.7	59.4
전산업	31.2	30.5	28.3	25.8	25.3	28.6	36.9	37.0	37.8	38.4	39.7	47.4	46.6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신규 조사 포괄 업종들임('A.농림어업'은 조사대상 업종 아님)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표 6-2〉 업종별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농림어업	43.3	40.7	44.7	43.8	41.0	44.7	45.1	46.6	50.0	48.9	48.7	50.2	46.8
B.광업	29.6	30.4	30.8	36.8	34.9	36.9	34.6	34.3	31.9	32.6	34.0	34.0	34.6
C.제조업	47.5	47.5	48.4	48.1	46.4	44.7	44.0	44.2	45.1	43.9	44.0	44.9	45.0
D.전기가스업	8.9	9.3	8.7	9.0	9.0	9.6	8.3	9.2	10.3	9.4	9.6	9.5	9.9
E.폐기물환경	44.7	40.6	44.8	46.5	40.8	43.8	38.4	40.8	37.1	37.7	34.5	39.6	36.0
F.건설업	27.6	28.7	28.8	27.3	28.9	26.9	28.0	25.4	24.8	26.2	27.7	24.4	24.3
G.도소매업	59.4	57.8	60.4	61.0	61.5	59.0	59.0	58.7	56.7	57.3	56.4	55.6	55.7
H.운수업	56.7	57.6	52.1	53.3	52.6	53.4	51.0	51.6	49.7	52.5	51.6	52.9	50.7
I.숙박음식업	88.9	90.2	90.0	87.6	84.4	87.8	87.4	87.6	87.7	89.1	88.4	84.9	85.2
J.정보서비스	21.3	20.5	21.2	23.9	23.5	22.1	23.6	24.0	25.0	22.8	22.7	23.9	25.5
K.금융보험업	27.0	26.7	26.2	31.3	28.3	28.9	33.6	31.2	35.8	30.0	24.4	24.2	23.1
L.부동산임대	70.6	72.7	69.4	70.0	67.8	72.5	71.6	69.6	68.2	65.4	67.7	68.2	69.7
M.기술서비스	24.9	22.7	23.2	23.3	22.9	22.0	22.6	23.8	22.8	21.4	23.0	24.8	24.7
N.사업지원	56.2	54.3	59.0	56.3	61.2	60.2	57.2	57.0	58.7	58.1	56.4	57.0	59.1
P.교육서비스	36.2	36.9	32.6	31.9	32.5	32.6	35.0	39.4	37.0	38.7	38.9	40.9	42.3
Q.보건복지	63.7	63.4	61.6	60.2	63.3	65.2	64.9	67.0	66.0	66.1	65.8	68.0	68.3
R.예술여가	69.4	61.4	66.1	66.1	66.2	65.9	66.3	66.9	66.2	70.0	69.6	69.0	68.6
S.기타서비스	59.2	62.4	64.5	65.2	64.7	65.5	66.4	65.7	65.4	66.2	66.2	62.1	62.3
전산업	50.0	50.0	50.0	50.0	50.1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신규 조사 포괄 업종들임('A.농림어업'은 조사대상 업종 아님)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표 6-3〉 업종별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농림어업	19.1	17.8	19.6	20.1	18.4	19.1	17.7	18.5	17.1	14.4	12.4	12.7	13.2
B.광업	8.7	9.7	8.2	9.2	9.7	9.9	8.7	8.6	5.6	6.6	4.4	3.9	5.0
C.제조업	20.4	19.6	18.1	18.7	17.3	16.3	12.8	10.9	10.0	6.9	5.4	4.4	4.7
D.전기가스업	3.2	2.6	2.5	2.1	2.4	1.0	0.7	1.1	1.0	0.9	1.0	0.5	0.4
E.폐기물환경	14.4	12.8	14.6	17.2	14.4	10.7	9.4	11.7	8.5	5.6	3.2	2.9	2.4
F.건설업	10.0	9.8	9.1	10.6	10.6	8.8	7.9	7.8	5.7	3.3	2.6	1.6	1.9
G.도소매업	31.1	29.7	31.0	31.1	32.1	30.0	25.1	24.3	21.2	18.9	14.4	9.1	10.6
H.운수업	31.9	31.3	26.8	27.5	28.3	27.0	22.0	22.7	20.3	19.5	16.6	12.7	11.1
I.숙박음식업	60.6	60.2	58.9	55.6	47.4	54.9	46.4	47.6	42.6	41.7	36.0	21.1	28.2
J.정보서비스	7.6	7.3	8.3	9.4	9.8	7.4	6.3	7.2	6.4	4.0	2.5	1.1	1.4
K.금융보험업	10.9	12.2	12.1	15.8	15.3	15.7	19.8	16.3	20.5	14.9	9.7	5.9	5.1
L.부동산임대	50.9	50.0	46.4	47.5	45.9	48.7	46.0	42.0	35.6	31.5	27.4	17.2	19.2
M.기술서비스	6.5	6.5	6.7	7.0	6.4	5.7	5.4	5.6	3.8	2.3	1.5	1.0	1.2
N.사업지원	22.7	18.8	22.7	22.5	22.7	19.8	17.5	14.7	11.2	6.8	5.6	4.0	5.8
P.교육서비스	13.7	13.8	12.7	11.6	11.5	10.9	11.1	13.5	12.3	14.1	12.3	5.4	8.2
Q.보건복지	26.8	27.0	22.5	22.6	24.8	22.9	22.7	18.6	12.5	8.9	6.2	4.9	6.1
R.예술여가	40.9	35.7	40.7	36.4	36.9	39.7	32.9	34.1	33.4	34.4	28.9	17.0	20.1
S.기타서비스	30.8	31.7	31.4	30.1	31.1	27.1	25.8	28.6	24.3	21.3	18.5	15.3	15.0
전산업	24.5	24.0	22.9	23.1	22.7	22.0	19.4	18.3	16.0	13.5	10.9	7.1	8.2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신규 조사 포괄 업종들임('A.농림어업'은 조사대상 업종 아님)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 <표 6-4>는 저임금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들의 산업분포를 나타낸 것임

- 전체 저임금 근로자 중 기존 개선안에서 제안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 조사'의 조사대상 포함 업종(<표 6-4>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업종들)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낮음
- 예를 들어, 광업, 전기가스업, 폐기물환경 등의 업종에서는 전체 저임금 근로자의 1% 미만이 종사하고 있고, 정보서비스,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도 각각 전체 저임금 근로자의 2% 미만임

<표 6-4> 저임금 근로자의 산업분포 - 2021년(단위: %)

	최저임금 1.5배 이하의 근로자 분포	중위임금 이하의 근로자 분포	중위임금의 2/3 이하의 근로자 분포
A.농림어업	0.2	0.2	0.4
B.광업	0.1	0.1	0.0
C.제조업	19.9	20.1	12.7
D.전기가스업	0.1	0.1	0.0
E.폐기물환경	0.4	0.4	0.2
F.건설업	4.0	4.1	2.0
G.도소매업	14.1	14.1	16.3
H.운수업	4.3	4.4	5.8
I.숙박음식업	13.2	12.7	25.7
J.정보서비스	1.7	1.8	0.6
K.금융보험업	1.4	1.4	1.9
L.부동산임대	3.7	3.6	6.0
M.기술서비스	3.1	3.3	1.0
N.사업지원	8.0	8.1	4.8
P.교육서비스	3.8	3.8	4.5
Q.보건복지	16.2	16.0	8.7
R.예술여가	2.1	2.1	3.7
S.기타서비스	3.8	3.7	5.4
합 계	100.0	100.0	100.0

주: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신규 조사 포괄 업종들임
(‘A.농림어업’은 조사대상 업종 아님)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2.2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

- 현행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체이며, 이들을 6개 범주(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등)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조사대상 사업체 규모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의 문제 또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초기에 300인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된 이유는 다분히 저임금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감안한 현실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임
- 과연 300인 미만의 사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역시 현재 저임금 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분포와 연관지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표 6-5>~<표 6-7>은 2021년 기준 산업별 및 규모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최저임금의 1.5배나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범주까지는 그 비중이 대략 40% 또는 그 이상이며
 - 중위임금의 2/3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종업원 수 0인 사업체에서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후 300인 미만 범주까지는 5% 이상을 보임
 - 다만,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볼 경우, 다수의 업종에서 규모별로 10인 이상의 범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3% 이하로 매우 낮음

<표 6-5> 산업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액 1.5배 이하 근로자의 비중 - 2021년(단위: %)

	전규모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A.농림어업	44.2	79.9	57.2	55.2	42.6	34.6	21.2	n.a.	12.1
B.광업	30.5	78.3	29.9	21.4	36.1	31.2	14.4	3.6	31.8
C.제조업	41.5	56.3	52.2	42.7	48.1	47.3	41.8	32.5	16.3
D.전기가스업	8.2	n.a.	33.9	11.4	17.8	7.5	11.0	4.0	3.6
E.폐기물환경	30.7	40.5	44.9	40.8	35.4	24.6	12.2	1.2	2.2
F.건설업	22.2	10.6	37.7	26.5	16.3	13.3	16.9	18.9	5.9
G.도소매업	52.0	94.0	62.8	47.9	41.2	35.6	34.6	23.5	11.0
H.운수업	46.8	52.2	47.8	40.7	41.0	56.3	48.5	40.3	38.1
I.숙박음식업	82.7	89.7	85.4	79.6	73.6	74.0	60.1	57.5	36.4
J.정보서비스	22.6	79.2	45.9	34.4	27.2	23.2	13.9	15.7	6.1
K.금융보험업	20.7	79.5	50.1	22.7	17.1	18.3	16.0	7.1	7.8
L.부동산임대	67.0	84.2	70.1	67.5	74.7	68.0	30.5	15.0	12.6
M.기술서비스	21.6	86.0	50.2	34.7	25.8	18.5	9.6	10.6	5.2
N.사업지원	54.3	61.0	56.8	50.6	49.4	55.2	55.0	62.7	53.7
P.교육서비스	38.9	62.8	58.1	54.2	53.5	19.1	18.2	17.2	17.4
Q.보건복지	64.5	75.0	78.5	72.9	67.3	65.6	61.7	48.8	29.3
R.예술여가	64.4	85.7	76.4	63.8	53.5	59.9	33.2	13.1	35.1
S.기타서비스	59.4	74.1	70.8	58.9	49.1	39.2	33.7	21.2	7.3
전산업	46.6	77.4	63.6	49.0	44.8	42.2	38.5	29.1	18.2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표 6-6> 산업별 및 규모별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의 비중 - 2021년(단위: %)

	전규모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A.농림어업	46.8	81.3	59.9	57.0	44.7	37.9	25.5	n.a.	12.9
B.광업	34.6	78.3	33.3	25.9	39.5	38.2	16.0	3.6	35.1
C.제조업	45.0	57.8	56.1	46.2	51.7	51.0	45.8	36.7	18.6
D.전기가스업	9.9	n.a.	37.0	12.8	20.8	9.2	12.8	4.8	5.2
E.폐기물환경	36.0	61.6	49.3	46.6	39.1	32.1	15.4	2.3	3.4
F.건설업	24.3	10.6	39.8	28.7	18.1	15.9	20.8	21.4	6.6
G.도소매업	55.7	94.3	66.1	51.7	45.3	40.1	40.7	28.0	13.5
H.운수업	50.7	53.9	51.4	45.3	45.8	59.1	52.6	45.4	42.2
I.숙박음식업	85.2	90.2	88.0	82.9	77.7	78.0	64.5	61.7	39.0
J.정보서비스	25.5	83.3	47.9	37.8	31.5	26.7	16.8	19.1	7.0
K.금융보험업	23.1	79.5	52.1	25.0	19.6	21.5	20.3	9.3	9.1
L.부동산임대	69.7	86.7	73.0	70.2	77.4	70.8	33.8	16.6	13.2
M.기술서비스	24.7	89.3	53.8	38.3	29.6	22.2	12.1	13.5	6.7
N.사업지원	59.1	63.9	60.1	54.7	53.6	61.6	60.8	67.3	57.6
P.교육서비스	42.3	66.8	64.0	57.9	58.0	21.9	20.3	19.2	18.6
Q.보건복지	68.3	77.4	81.8	76.7	72.0	69.3	65.5	53.9	32.7
R.예술여가	68.6	87.2	80.9	68.1	60.3	64.1	38.2	17.4	37.9
S.기타서비스	62.3	78.0	73.0	61.7	53.0	43.1	36.5	21.8	10.1
전산업	50.0	78.7	66.8	52.4	48.5	46.0	42.6	32.8	20.4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표 6-7> 산업별 및 규모별 중위임금의 2/3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 2021년(단위: %)

	전규모	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A.농림어업	13.2	6.7	9.0	17.3	15.2	14.2	7.5	n.a.	1.7
B.광업	5.0	35.0	8.0	2.9	4.5	6.1	0.5	0.0	0.7
C.제조업	4.7	18.5	6.2	3.5	5.7	5.4	4.4	3.5	1.5
D.전기가스업	0.4	n.a.	4.1	0.1	1.1	0.2	0.9	0.0	0.0
E.폐기물환경	2.4	17.9	4.3	3.2	3.8	0.7	0.3	0.0	0.2
F.건설업	1.9	5.3	3.2	2.3	0.7	0.7	3.8	1.2	0.2
G.도소매업	10.6	61.5	12.6	4.0	3.3	2.3	1.9	2.5	0.7
H.운수업	11.1	24.3	10.3	5.3	5.0	17.8	12.0	7.6	8.6
I.숙박음식업	28.2	49.1	27.4	18.4	15.1	19.7	8.2	12.2	2.5
J.정보서비스	1.4	37.6	5.8	2.7	1.5	0.5	0.3	0.7	0.1
K.금융보험업	5.1	65.0	27.1	2.7	0.6	1.2	1.5	0.2	0.5
L.부동산임대	19.2	45.6	21.7	17.3	20.2	20.1	2.5	0.2	0.5
M.기술서비스	1.2	24.4	5.1	0.8	1.1	0.6	0.3	0.3	0.1
N.사업지원	5.8	33.4	10.0	6.8	4.2	4.5	3.8	2.7	0.2
P.교육서비스	8.2	34.3	13.8	11.1	4.5	1.3	2.0	0.8	1.0
Q.보건복지	6.1	10.6	7.7	3.4	4.1	6.5	15.2	8.8	1.6
R.예술여가	20.1	54.5	19.5	13.1	7.2	15.9	4.0	0.0	17.4
S.기타서비스	15.0	36.7	20.5	11.2	8.8	5.1	3.4	7.2	0.0
전산업	8.2	43.3	13.5	5.8	4.9	5.3	5.2	3.0	1.4

*출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3. 표본설계

3.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모집단을 전체 사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 표본추출틀로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함
- 조사대상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정책적인 활용 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표본설계에서 모집단 설정은 이를 반영하여 수정될 수 있을 것임

3.2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범위 확대

- 조사대상 업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사대상 사업체를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의 규모로 제한을 둘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함

3.3 표본크기, 층화, 표본배분, 가중치 부여 및 추정

- 이 조사의 통계작성 단위는 산업대분류 구분이며, 조사대상 업종이 확대되면 전체 표본크기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함
- 다만, 본 조사는 업종별 통계작성이 필요하고 주요 공표항목이 모비율 추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업종별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층화에 사용된 변수는 사업체의 업종과 사업체 규모 구분이며, 각 업종 내에서 사업체 규모별 표본배분 방법으로 제공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모집단 특성 추정에 대한 대표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추정에 활용하는 방안은 적합함
- 가중치는 사업체 가중치 및 저임금근로자 가중치를 구분하여 부여하여야 하며, 설계 가중치, 무응답보정 가중치, 사후층화조정 가중치를 포함한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함

4. 조사표 구성

4.1 근로자 응답대상

- 응답대상 검토 및 일치하도록 구성
 - 조사대상 근로자수는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체 대상 조사표는 일용/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응답대상을 검토 및 일치하도록 구성
- 근로자 응답대상자 선정과 구분이 용이하도록 사업체 조사표에서 관련 정보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4.2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조사표

- 사업체 현황 및 최저임금 현황 검토
 - 사업체의 정보확인 및 자료연계를 위한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항목 추가 고려
 - 최저임금의 제시된 정보가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황표에 제시된 정보의 범위 검토
- 시간 흐름 순으로 응답란 제시 고려
- 응답대상이 달라지지 않는 문항은 독립질문으로 구성 필요
- 항목별 변동에 대한 응답과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혼합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문을 구분하는 방안 필요
-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질문하는 항목은 복수응답 개수를 제한하여 순위 질문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
-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은 항목 검토 필요함
- 문항 배치 검토 필요
- 가구 전체 소득 및 지출금액으로 최대범위(500만원 이상)가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필요함
- 사업장의 고지 여부를 근로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 필요함

5. 조사체계

-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각 지방관서별로 이루어졌던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채용 및 교육 등을 조사 전문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수행
 - 근로감독관은 조사 불응 사업체에 대한 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응답률 제고
- 최저임금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기업규모 군에 대해 선정 가능한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조사의 우선순위 기준 명확화
- 업종별·규모별로 충분한 수의 예비표본을 확보하여 단위 무응답 발생 시 명확한 표본대체지침에 따라 표본 대체하여 조사
 - 원표본과 층화변수(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 및 정렬변수(시도, 시군구 등)가 동일하면서 가장 가까운 표본 활용
 - 전체 목표 표본 수뿐만 아니라 층별 목표 표본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본을 관리

참고문헌

- 강승복(2005),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5월호, pp.43~54
- 강창희(2020),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or)을 활용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6(1), 87~133.
- 김대일(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pp.29~50.
- 김민정(2014), 현안과 과제 :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 *이슈리포트*, 2014.30, pp.1~9
- 김복순(2018), 저임금근로자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7월호, pp.83~85
- 김영란(2005), 한국의 신빈곤현상과 탈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 근로빈곤층(the working poor)의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pp.41~70
- 김은하·백학영(2011), 저임금 근로 특성 및 결정요인의 성별차이,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63~81
- 김은하·백학영(2012), 성별 저임금근로의 위험과 임금격차, *노동정책연구*, 12(2), pp.75~104
- 성재민(2014), 저임금근로자의 실태, *노동리뷰*, 3월호, pp.5~19
- 유완식(2018), 장애인근로자 저임금 실태 분석, pp.1~106
- 이정만·황승진(2018),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분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24(2), pp.1~28
- 정성미(2011), 저임금 고용의 실태분석, *노동리뷰*, 7월호, pp.55~65
-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정형옥(2016), 여성 저임금근로자 실태분석 및 생활임금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3월호
- 조문경(2015), 저임금근로자 국제비교, *노동리뷰*, 5월호, 122. pp.87~88
- 한국조사연구학회(2020),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 한국조사연구학회(20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추정방안 연구
- Card, David, and Alan B. Krueger(1995), *Myth and Measurement: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mian Grimshaw. (2011), 경제위기와 저임금 고용: 영국의 정책조치,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pp.28~41

부록 : 조사표



※ 조사원 기입										※ 응답자 기입	
지방관서 번호	사 업 체 번호					산업분류 번호	사업체 규모	응답 자 구분	① 사업주 ② 대리응답자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표

- 사업주 대상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응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이며,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본 조사는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 통계법 제15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최저임금 관련 사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최저임금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여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조사표에 기재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표의 응답 내용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사는 통계 전문 연구기관에서 대표성과 신뢰성에 기반하여 업종별 규모별 표본추출한 결과에 따라 표본 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업활동으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가능한 **사업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고, 문항별 보기항목에 ☐표시하거나 ☐안에 숫자(명수, 금액 등 단위 확인)를 적어 주십시오.

- 인터넷 조사 참여: www.narastat.kr/mwc2021i
 - 조사표, 결과 보고서 파일 다운로드: www.minimumwage.go.kr
- * 인터넷 조사 참여 문의는 하단의 연락처를 참조
 - * 결과 통계표 조회: <https://kosis.kr>

※ 조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소 속	_____ 지방고용노동청		_____ 지청		근로개선지도 _____ 과				
담당공무원	(근로감독관)		조 사 원				회수 연번		
전 화 번 호	() -		조 사 방 법	기 입 방 법			조 사 방 법		
팩 스	() -			① 응답자 기입식 ② 조사원 면접식 ③ 기타()			① 현장 회수 ② FAX, E-mail 회신 ③ 전화 응답 ④ 인터넷 응답 ⑤ 기타()		
이 메 일	@			표 본 구 분			① 원표본 ② 대체표본(예비) ③ 대체표본(현장)		

※ 붉은 선안 내용은 조사완료 후 조사원이 기입



최저임금위원회

기본 현황

* 주요 생산품목(재화 또는 서비스)이 다수인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품목을 기입

업 체 명				
소재지(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주요 생산품목 (재화 또는 서비스)*		노조유무		☐ ① 있음 ☐ ② 없음
작성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1 경영여건

	2020년(실적액)	2021년(1~12월 추정액)
1) 매출액	억 천 백만원	억 천 백만원
2) 인건비	억 천 백만원	억 천 백만원

- 인건비: 결산서 상 인건비 총액(임금,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액, 복리시설 부담액, 복리후생비, 채용관련 비용, 교육훈련비 등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일체 비용

1-1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올해 경영사정은 어떻습니까?

□ ① 좋아졌다 →	1)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u>경영사정이 좋아진</u>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 ② 원자재 가격 하락
	□ ③ 인건비 감소	□ ④ 임차료 감소
	□ ⑤ 기타()	
□ ② 나빠졌다 →	2) 지난해와 비교하여 귀사의 <u>경영사정이 나빠진</u>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까지 선택)	
	□ ① 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② 원자재 가격 상승
	□ ③ 인건비 상승	□ ④ 임차료 상승
	□ ⑤ 기타()	
□ ③ 전년과 비슷하다		

2 귀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성별 · 고용형태별로 몇 명입니까? ('21.11.15. 현재)

* 귀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파견 혹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제외

고용형태별/성별		전 체		
			남자	여자
	정 규 직	명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명
합 계		명	명	명

- 비정규직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계약)제 근로자 등인 경우
 -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 **기간(계약)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 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이 아닌 경우(일당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액과 인상액 >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일 환산액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8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주44시간 기준	
		(인상액)	(인상률)		(인상액)		(인상액)		(인상액)
'18년	7,530	↑ 1,060	16.4%	60,240	↑ 8,480	1,573,770	↑ 221,540	1,701,780	↑ 239,560
'19년	8,350	↑ 820	10.9%	66,800	↑ 6,560	1,745,150	↑ 171,380	1,887,100	↑ 185,320
'20년	8,590	↑ 240	2.87%	68,720	↑ 1,920	1,795,310	↑ 50,160	1,941,340	↑ 54,240
'21년	8,720	↑ 130	1.5%	69,760	↑ 1,040	1,822,480	↑ 27,170	1,970,720	↑ 29,380
'22년	9,160	↑ 440	5.05%	73,280	↑ 3,520	1,914,440	↑ 91,960	2,070,160	↑ 99,440

< 최저임금 감액적용: 최저임금액의 90% >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3개월 이하 수습 중 10% 감액)			일 환산액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8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주44시간 기준
'18년	6,777			54,216		1,416,393		1,531,602
'19년	7,515			60,120		1,570,635		1,698,390
'20년	7,731			61,848		1,615,779		1,747,206
'21년	7,848			62,784		1,640,232		1,773,648

■ 최저임금 산입범위(2021년 기준)

-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② 법정 유급주휴수당
- ③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초과분
- ④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 아래의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 ①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 ②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1,822,480원×15%=273,372원) 해당 부분
- ③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1,822,480원×3%=54,674원) 해당 부분

*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산입됨

3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수준을 받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몇 명입니까?
(전체근로자가 아님에 유의)

* 귀사에서 근무하더라도 파견 혹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 수준을 받는 근로자 수		'21.11.15. 현재	'20.12월말
	정 규 직	명	명
	비정규직	명	명
합 계		명	명
여 자		명	명

3-1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많이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상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적게 인상	인상 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 없음
1)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인 근로자	☐ 1	☐ 2	☐ 3	☐ 4	☐ 5
2)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나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인 근로자	☐ 1	☐ 2	☐ 3	☐ 4	☐ 5
3) 최저임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	☐ 1	☐ 2	☐ 3	☐ 4	☐ 5

-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만 판단하여야 하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4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
- ☐ ② 고용에 변동이 없었다
- ☐ ③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증가했다
- ☐ ④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고용이 감소했다

5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다음 항목별로 변동이 있었습니까?

항목	보기		
1) 순이익(이윤)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2) 제품(서비스) 가격	☐ ① 인상되었다	☐ ② 인하되었다	☐ ③ 영향이 없었다
3) 인건비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4) 신규채용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5) 근로시간	☐ ① 증가하였다	☐ ② 감소하였다	☐ ③ 영향이 없었다

5-1

올해('21년: 8,720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임금산정 방식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 ☐ ① 변화가 없었다
- ☐ ② 수당이나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으로 전환(포함)하였다
- ☐ ③ 호봉급, 직무급 등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
- ☐ ④ 기타()

6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수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 해당 근로자가 맡는 업무가 단순하므로
- ☐ ②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주어도 인력을 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 ☐ ③ 기업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 ☐ ④ 해당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여서
- ☐ ⑤ 기타()
- ☐ ⑥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

7

최저임금액 또는 그 이하의 임금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그들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 ①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 ☐ ② 적절한 수준이다
- ☐ ③ 받는 임금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 ☐ ④ 받는 임금과 생산성을 비교하기가 어려워 모르겠다
- ☐ 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

8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 ① 근로자의 생계비 | ☐ ②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
| ☐ ③ 노동생산성 | ☐ ④ 소득분배 상황 |
| ☐ ⑤ 경제성장률 | ☐ ⑥ 물가상승률 |
| ☐ ⑦ 실업률 등 고용사정 | ☐ ⑧ 기업의 지불능력 |
| ☐ ⑨ 기타() | |

9 올해('21년: 8,720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 ③ 보통이다 |
|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 |

10 '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21년: 8,720원)보다 5.05%가 인상된 시급 9,160원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 ③ 보통이다 |
|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 |

11 '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2년(9,160원)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동결(9,160원) | ☐ ② 3% 미만(9,435원 미만) |
| ☐ ③ 3~6% 미만(9,435원~9,710원 미만) | ☐ ④ 6~9% 미만(9,710원~9,984원 미만) |
| ☐ ⑤ 9~12% 미만(9,984원~10,259원 미만) | ☐ ⑥ 12~15% 미만(10,259원~10,534원 미만) |
| ☐ ⑦ 15% 이상(10,534원 이상) | |

12 귀하의 회사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제공하는 현물급여(금전지급 제외)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 | |
|------------------------------------|---|
| ☐ ① 숙소 제공 | ☐ ② 식사 제공(식당운영 포함) |
| ☐ ③ 통근차량 운행 | ☐ ④ 상품권 지급 |
| ☐ ⑤ 기타() | ☐ ⑥ 제공하는 현물급여 없음 |

12-1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이 됩니까?

- | | | |
|---------------------------------|-------------------------------------|---------------------------------------|
| ☐ ① 제공된다 | ☐ ② 제공되지 않는다 | ☐ ③ 외국인 근로자 없음 |
|---------------------------------|-------------------------------------|---------------------------------------|

13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① 정부 | ☐ ② 사용자 | ☐ ③ 근로자 | ☐ ④ 사용자단체 |
| ☐ ⑤ 최저임금위원회 | ☐ ⑥ 노동자단체 | ☐ ⑦ 기타() | |



다음 장의 **부가조사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자 번호	② 임금 지급주기	< 임금 산정기준 >	
		③ 임금액	④ 근로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했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
01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02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03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04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05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06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① 근로자 번호	② 임금 지급주기	< 임금 산정기준 >	
		③ 임금액	④ 근로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면 주휴시간까지 포함)
07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08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09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10	① 시급제	(1) 시급 원 →	(1) 시간
	② 일급제	(2) 일급 원 →	(2) 1일 시간
	③ 주급제	(3) 주급 원 →	(3) 1주 시간
	④ 월급제	(4) 월급 원 →	(4) 1개월 시간

참고

- 사업주께서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8,720원 × 1.5배 = 13,080원)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을 작성
 - '③ 임금액'을 '④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5배(시급 13,080원) 이하인 근로자가 조사 대상(초과하면 제외)
 - '① 근로자 번호'는 근로자 조사표 표지 오른쪽 위에 있는 '근로자 번호'와 같아야 함

작성 요령

- ② 지급주기: 근로계약 시 정해진 임금 지급주기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 표시
- ③ 임금액: 근로자의 임금 지급주기 기준에 따른 임금액을 기재
 - 연봉제인 경우는 기본 연봉총액(성과연봉, 수당, 퇴직금 제외)을 월할 계산하여 '월급제'로 표시하고 임금액 기재
 - *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8시간×5일+8시간)×4.345주)이 아닌 경우,
월 환산액은 '최저시급(8,720원) × ④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적용
 - 임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따른 임금으로 기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항목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제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등
법정주휴수당은 포함	가산임금은 제외,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약정 유급휴일 임금 등은 제외
현물이 아닌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만 포함	현물로 제공되는 임금(식사 제공, 기숙사 제공 등)은 제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15%(273,372원)를 초과 금액과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822,480원)의 3%(54,674원)를 초과 금액은 포함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5%,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금액은 불포함

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계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에서 상여금 월 500,000원, 복리후생비 월 200,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 상여금 226,628원(500,000-273,372원), 복리후생비 145,326원(200,000-54,674원)은 '③임금액'에 포함

- ④ 근로시간: ③ 임금액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수를 기재
 -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임금산정의 기초인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

(1) 내용검증을 위한 연락처 기입

- 응답해 주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응답자분께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값 내용검증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무선전화	()	-
유선전화	()	-

(2) 심층 면접조사 동의

- 본 국가승인 통계조사의 내용검증을 위한 '(1) 내용검증을 위한 연락처 기입'과 별도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면접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선택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설문조사 이후에 필요 시 추가 면접조사(전화, 대면)를 하고자 합니다. 면접조사 진행 시 귀하의 개인정보가 연구진에게 제공·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심층 조사 대상 선정 및 진행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시고, 동의하시는 경우 성함과 연락처를 아래 기입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함: _____ (서명)

연락처: _____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농업	(02)임업 (03)어업
B	광업(05~08)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7)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6)금속 광업 (08)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10~34)	(10)식료품 제조업 (12)담배 제조업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 (26)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가구 제조업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1)음료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36)수도업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7)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9)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41~42)	(41)종합 건설업	(42)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7)소매업, 자동차 제외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H	운수 및 창고업(49~52)	(49)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1)항공 운송업	(50)수상 운송업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55)숙박업	(56)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58~63)	(58)출판업 (60)방송업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1)우편 및 통신업 (63)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64~66)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68)	(68)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0)연구개발업 (72)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1)전문 서비스업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4)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6)임대업, 부동산 제외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85)	(85)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보건업	(87)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94)협회 및 단체	(95)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 조사원 기입										※ 사업주 부가조사표의 근로자 번호를 기입	
지방관서 번호		사업체 번호				산업분류 번호		사업체 규모	근로자 번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표

- 근로자 대상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이며,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본 조사는 **최저임금법 제4조 및 제23조, 통계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표에 기재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표의 응답 내용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사표, 결과분석 보고서 등 확인: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 통계청 나라통계(www.narastat.kr)

응답자 선정원칙

- 귀하는 본 조사표를 작성해주실 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약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5배 수준을 초과**한다면,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가 설문지 작성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다른 근로자로 대체되도록 본 조사표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를 작성해야 할 근로자 기준(조사대상): **최저임금액 1.5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최저임금액(2021년 시급 8,720원)의 1.5배:**

시급 13,080원, 일환산액 104,640원(일8시간), 월환산액(주휴수당 포함) 2,733,720원(주40시간), 2,956,080원(주44시간)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항목별로 보기항목에 "○"자 표시하거나 ☐ 안에 숫자(명수, 금액 등 단위 확인)를 적어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 안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 한 항목의 기재가 끝나면 다음 항목을 기재하되, 화살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적어주십시오.
- 응답 항목 중에서 2개 이상 선택하는 항목(복수응답)은 1순위로 생각하시는 한 가지만 적으셔도 됩니다.

※ 조사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소 속	_____ 지방고용노동청 _____ 지청 _____ 근로개선지도 _____ 과			
담당공무원	(근로감독관)	조 사 원		
전 화 번 호	() -	조 사 방 법	기입 방법	회수 방법
팩 스	() -		① 응답자 기입식	① 현장 회수
이 메 일	@		② 조사원 면접식	② FAX, E-mail 회신
			③ 기타()	③ 전화 응답
				④ 인터넷 응답
				⑤ 기타()

※ 붉은 선안 내용은 조사완료 후 조사원이 기입

1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 자
- ☐ ② 여 자

2 귀하의 연령대는?

- ☐ ① 20세 미만
☐ ② 20~30세 미만
☐ ③ 30~40세 미만
☐ ④ 40~50세 미만
☐ ⑤ 50~60세 미만
☐ ⑥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 ① 고졸 이하
- ☐ ② 대학(전문대포함) 재학
- ☐ ③ 대학(전문대포함) 졸업 이상

4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 ☐ ① 6개월 미만
- ☐ ② 6~12개월 미만
- ☐ ③ 1~2년 미만
- ☐ ④ 2~5년 미만
- ☐ ⑤ 5년 이상

5 현 직장에서 다음 각각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모든 항목에 기입)

	가입 여부	
5-1) 국민연금	① 가입	② 미가입
5-2)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5-3) 고용보험	① 가입	② 미가입

6 가구원 현황

6-1) 귀하의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본인 포함	6-2) 귀하의 가구원 중에서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소득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본인 포함
명	명

- 가구원: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 혈연관계의 가족이라도 취업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비혈연 관계라도 숙식을 같이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

7 귀하 가구의 올해(21년) 10월 총 소득(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은 모두 얼마입니까? ※ 세금 납부 전

- ☐ ① 80만원 미만 ☐ ② 80~100만원 미만 ☐ ③ 100~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 ⑤ 200~300만원 미만 ☐ ⑥ 300~400만원 미만
☐ ⑦ 400~500만원 미만 ☐ ⑧ 500만원 이상

- 이전소득: 생산활동에 공헌한 대가로 지불된 소득이 아닌 정부 또는 기업이 반대급여 없이 무상으로 지불한 소득(사회보장급여, 보조금, 증여 등)
- 비경상소득: 퇴직금, 사고보상금, 경조소득 등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8 귀하의 가구에서 올해('21년) 10월에 지출한 총 가계지출액(총 가구원의 모든 지출 포함)은 모두 얼마입니까? ※ 현금지출 외에 현물지출도 포함

- ☐ ① 80만원 미만 ☐ ② 80~100만원 미만 ☐ ③ 100~150만원 미만
☐ ④ 150~200만원 미만 ☐ ⑤ 200~300만원 미만 ☐ ⑥ 300~400만원 미만
☐ ⑦ 400~500만원 미만 ☐ ⑧ 500만원 이상

▪ 가계지출: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소비지출(식료품비, 의류·신발 등 구입비,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교양·문화비, 외식·숙박비)과 비소비지출(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납부비용 등) 모두 포함

9 귀하의 근로소득(임금)은 귀하 가구의 총 소득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 ☐ ① 가계의 주소소득원 ☐ ② 가계의 보조소득원 ☐ ③ 주로 개인 소비용
☐ ④ 기타()

▪ 가계의 주소소득원: 주로 가계지출에 사용되며, 가구 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 가계의 보조소득원: 일정부분 가계지출에 활용되나, 가구 내 소득 중 비중이 가장 크지는 아니한 경우
 ▪ 주로 개인 소비용: 가계지출에 활용되지 않고, 개인의 소비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
 ▪ 기타: 자산변동, 부채감소 등을 위한 지출에 활용되는 경우

B 현재 직장 관련

10 귀하의 현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

10-1. 비정규직 고용형태

- ☐ ① 시간제근로자
☐ ② 일용근로자
☐ ③ 기간(계약)제근로자
☐ ④ 기타

▪ 비정규직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계약)제 근로자 등인 경우
 ① 시간제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아르바이트 사원,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③ 기간(계약)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이의 반복 갱신을 통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되 정식사원이 아닌 경우(일당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11 귀하가 현재의 직장에서 하시는 일은? (조사표 6쪽 직업분류표 참고)

- ☐ ①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③ 사무종사자 ☐ ④ 서비스종사자
☐ ⑤ 판매종사자 ☐ ⑥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⑧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⑨ 단순노무종사자

최저임금액과 인상액

(단위: 원)

적용 연도	시급			일 환산액		월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인상액)	(인상률)	8시간 기준	(인상액)	주40시간 기준	(인상액)	주44시간 기준	(인상액)
'18년	7,530	↑ 1,060	16.4%	60,240	↑ 8,480	1,573,770	↑ 221,540	1,701,780	↑ 239,560
'19년	8,350	↑ 820	10.9%	66,800	↑ 6,560	1,745,150	↑ 171,380	1,887,100	↑ 185,320
'20년	8,590	↑ 240	2.87%	68,720	↑ 1,920	1,795,310	↑ 50,160	1,941,340	↑ 54,240
'21년	8,720	↑ 130	1.5%	69,760	↑ 1,040	1,822,480	↑ 27,170	1,970,720	↑ 29,380
'22년	9,160	↑ 440	5.05%	73,280	↑ 3,520	1,914,440	↑ 91,960	2,070,160	↑ 99,440

12

지난해('20년) 시급 8,590원에서 올해('21년) 8,720원으로 시간당 130원(1.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귀하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 ①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130원)을 초과하여 임금이 인상되었다
- ☐ ②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130원)만큼 임금이 인상되었다
- ☐ ③ 최저임금 인상액(시급 기준 130원) 미만으로 임금이 인상되었다
- ☐ ④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13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 ① 근로자의 생계비 ☐ ②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
- ☐ ③ 노동생산성 ☐ ④ 소득분배 상황
- ☐ ⑤ 경제성장률 ☐ ⑥ 물가상승률
- ☐ ⑦ 실업률 등 고용사정 ☐ ⑧ 기업의 지불능력

14

올해('21년: 8,720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 ③ 보통이다
-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5

올해('21년: 8,720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귀하의 생활 향상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습니까?

-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 ☐ ② 조금 도움이 된다
- ☐ ③ 보통이다
- ☐ ④ 별로 도움이 안된다
- ☐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 ☐ ⑥ 무관하다

16

'22년(9,160원)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21년: 8,720원)보다 5.05%가 인상된 시급 9,160원입니다. 해당 최저임금액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 ③ 보통이다
- ☐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17

'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2년(9,160원)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동결(9,160원) ☐ ② 3% 미만(9,435원 미만)
- ☐ ③ 3~6% 미만(9,435원~9,710원 미만) ☐ ④ 6~9% 미만(9,710원~9,984원 미만)
- ☐ ⑤ 9~12% 미만(9,984원~10,259원 미만) ☐ ⑥ 12~15% 미만(10,259원~10,534원 미만)
- ☐ ⑦ 15% 이상(10,534원 이상)

18

최저임금제도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⑥ 잘 모르겠다

19

귀하의 사업장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매년 고지하고 있습니까?

- ☐ ① 고지하고 있다 ☐ ② 고지하지 않고 있다 ☐ ③ 잘 모르겠다

20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정부 ☐ ② 사용자 ☐ ③ 근로자 ☐ ④ 사용자단체
☐ ⑤ 최저임금위원회 ☐ ⑥ 노동자단체 ☐ ⑦ 기타()

※ 응답 확인 및 검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
내용검증을
위한
연락처
기입

※ 응답하신 분께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무선전화	() -
유선전화	() -

(2)
심층
면접조사
동의

※ '(1) 내용검증을 위한 연락처 기입'과 별도로
추가 현장의견 청취하는 면접조사 추진을 위한 연락처 제공 동의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설문조사 이후에 필요 시 추가 면접조사(전화, 대면)를 하고자 합니다.
면접조사 진행 시 귀하의 개인정보가 연구진에게 제공·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심층 조사 대상 선정 및 진행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표시해주시고, 동의하시는 경우 성함과 연락처를 아래 기입란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함: (서명)

연락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① 관리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 고위임원, 기업체의 영업소 및 지점의 소장(총괄적인 관리 수행), 정부행정부서의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연구원(과학, 정보통신, 공학),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임상병리사, 치기공사, 물리치료사, 건축캐드원, 성직자, 대학교수, 대학시간강사, 장학관, 대학조교, 교사,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자산운용가, 감정평가사, 경매사, 중개사, 큐레이터, 사서, 쇼핑호스트, 촬영기사, 아나운서, 화가, 배우, 가수, 경기감독 및 코치, 직업운동선수, 마술사 등
③ 사무종사자	공공행정사무(조세, 행정, 병무, 특허, 감사, 통계, 총무, 기획, 자재, 교육), 회계(경리)사무원, 비서, 출판사무원, 전화상담원(전화안내원), 속기사, 운송관련 사무원 등
④ 서비스종사자	경찰관, 경호원, 무인경비원, 청원경찰, 교도관, 주차단속원, 간병인, 이(미)용사, 분장사, 장례지도사, 객실승무원(항공, 선박, 열차), 여행가이드, 딜러, 캐디, 통역원, 주방장(조리사), 바텐더, 웨이터, 결혼상담원, 오락(PC방, 노래방) 서비스원 등
⑤ 판매종사자	영업종사자(자동차, 보험), 매장판매종사자, 매장계산원, 요금정산원, 상품대여종사자, 방문판매원, 텔레마케터, 행사홍보 도우미, 매표원, 노점(이동)판매원, 판촉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작물(곡식, 채소, 특용, 과수, 원예)재배종사자, 조경원,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벌목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양봉종사원, 감별사, 수렵종사원 등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정육원, 도축원, 재봉사, 재단사, 의복(한복·양장)제조원, 가구제조원, 금형원, 용접원, 자동차정비원, 항공기정비원, 설치원(승강기, 기계, 공조기, 보일러, PC, 사무기기, 인터넷), 각종 수리원, 전기공, 건축목공, 미장공, 도배공, 광원, 공예원, 배관공, 방역원 등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각종 기계(식품가공, 섬유 및 신발, 화학, 금속, 전기, 전자, 상하수도, 목재, 인쇄, 재활용처리, 사진)조작원, 자동조립라인 조작원, 산업용로봇조작원, 자동차·자동차부품조립원, 기관사, 운송관련(택시, 버스, 화물, 배, 특수, 기중기 등)운전원 등
⑨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단순노무자, 이삿짐운반원, 집배원, 택배원, 배달원(음식·신문), 수동포장원, 단순선별원, 청소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주방보조원, 주유원, 산불감시원, 가스검침원, 수금원, 주차관리(안내)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검표원 등



MEMO

2022년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발 행 일 2022년 7월
발 행 인 통계청장 한 훈
발 행 처 통계청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안 내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국가통계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로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인용 및 출처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통계청에 있습니다.